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정리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 사회는 너무 서둘러 추진된 산업화와 지나치게 빠른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허점과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라는 깃발아래 양적인 경제성장만 쫓다가, 다리와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양적 성장 못지 않게 중요한 사람대접을 소홀히 한 결과, 주요한 삶의 터전인 가족과 학교가 붕괴하는 등, 곳곳에서 균열과 붕괴의 징후가 뚜렷하다(정유성, 2001: 7-8).

가족 이기주의, 부패, 타인의 인권 무시,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부재, 금권 만능주의 등으로 나타난 사회적 병리현상들은, 청소년들의 생활 현장에서도 이기주의, 촌지, 부적응아들에 대한 차별과 왕따, 폭력, 성적 만능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일찍이 후쿠야마(1999)는 “저신뢰의 사회”라고 일갈하였다.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는 부패의 먹이사슬과 탈세, 분식회계 등으로, 외부인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외신인도 저하와 IMF 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기업의 운영이 종전 보다 많이 투명해지고, 대규모적인 부정부패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논의되는 것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회적 자본은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행동 중에서 접근되고 동원되어 질

수 있는 자원 중 사회구조에 내재된 것“으로 정의되는데(Lin, 2001: 12),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연줄망이 사회적 자본의 구실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용학, 1997: 100-101).

한국 사회는 아직 산업화 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점차 정보화 사회의 특성들을 내포해 가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점차 개인들 사이의 상호신뢰에 바탕을 이룬 사회적 자본이 중요해지게 된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의 구축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필수적인 시민역량인 사회역량(social competence)이 취약할 경우, 사회적 비용부담의 과다와 우수한 인력개발의 부진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의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정유성, 2001: 26).

만일 한국 사회에서 사회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그 결핍돌인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같은 사회 병리적 현상을 그 근원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적 삶의 방식 훈련의 기초로서의 인권의식이 중요하다(정유성, 2001: 68).

곧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권 의식의 바탕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책임을 자각할 수 있는 양면적 사고가 전제가 되며, 아울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이 전제되기 때문이다(김중섭, 2001: 59).

게다가 사회가 개방화되고 정보화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 수록, 각 개인의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우의 필요성, 곧 인권보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경우, 현재까지 주요한 사회적 자본의 구

실을 해오고 있는 연줄망 내에서의 서로에 대한 믿음의 대상을 연줄망 밖에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김용학, 1997; 박찬웅, 1999).

그러나 한국사회는 역대로 인권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다. 전제 왕권국가였던 조선시대에는 현대적 의미의 태생적이고 보편적이며 신성불가침한 개개인의 인권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박노자, 2000: 3). 그리고 일제식민지 이후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구한 국가 주도의 개발독재 과정을 거치면서, 빈곤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정의”와 ‘인간의 삶’ 등에 관한 논의는 간과되어 왔다(조혜정, 1991: 6).

한국정부는 1990년 4월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을 비준하는 등(김녕, 1999: 42),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을 서명하고(노혜련, 1997: 103),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로 상징되듯, 한국의 인권상황은 객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국제법과 상충하는 국내법들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여전히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 노인 장애우 외국인노동자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낮다(박노자, 2000: 4). 2002년 9월 이후 한달 넘게 지속되어 전국의 각급 학교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폴로 눈병파문 속에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은 눈병에 걸리고 싶어 안달이었다. 눈병에 걸려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병균을 나누어 학교로부터 격리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학교문제를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이다(김인규, 2002). 이처럼 민주주의와 그 근간인 자유와 평등 및 인권에 대해 습득해야 할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

고 반항하고 자살하고 있는 현실(권이중, 1996: 485)은 우리에게 청소년 인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며(이봉철, 1991), 향상 방안에 대해 탐색하게 한다.

청소년은 사회의 한 희망인 동시에, 미래 사회를 책임지기 위해 준비하는 세대이다. 이들이 만일 서로에 대한 인권 의식을 제대로 함양하지 못한다면, 장성한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은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의 보다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각 개인간에 지역 간에 국가 간에 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곳은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은 인권을 보장받은 곳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인권, 특히 미래사회를 담지할 청소년들의 인권은 보장될 필요가 크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보다 개선된 인식을 갖게 만들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은 서로 구분된 청소년 생활공간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곧, 뭉둥이로 맞으면서 인권에 대해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육이은, 2001: 38)

그러나 이제까지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논의는 학교상황으로 국한되어,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실태와 이의 증진에 대한 당위성 모색, 방안 모색(이제연과 이소라, 1998; 성정숙, 1999; 문성호와 성정숙, 2000; 이소연과 문용우, 2002; 정준교, 2002a; 정준교, 2002b 등) 그리고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김종서, 1998; 이용교,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의 지

평을 넓혀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인식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 생활공간에서의 인권인식의 증진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곧,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인권의 실행은 인권을 일상 생활에서 반영해 주는 사회적 토양인 인권문화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인권실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활동은 인권 문화의 확산에 치중하게 되고, 인권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이 확립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능한 인권문화의 창조 또는 인권문화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 문화가 성숙되지 않고 인권 중심의 사고가 결여되어 있으면 사회 전반의 인권 실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중섭, 2001: 58-5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해 탐색한다. Coleman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후(Kalenberg, 2001), 인적 자본, 문화적 자본 등과 함께 개념적으로 세련화 과정을 밟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살펴본다.

둘째, 청소년 인권에 대해 탐색한다.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을 통해, 현재의 시점과 미래 시점에서의 바람직한 청소년 인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치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주어진 과업을 완수해 가는 ‘성장과정’이 아니

라, 전체적인 생애과정에서 아동기로부터 성인 초기로 이행해 가는 통합적인 이행과정으로 이해하는 청소년 육성, 청소년 개발의 관점에서 이를 살핀다(이광호, 2001: 7).

또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상호배반적이 아니고 병행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근거하여(현원일, 2001; 김정래, 2002),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 인권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과 함께 증진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탐색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의 증진방안에 대해 탐색한다.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에 따라,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올바른 청소년 인권의 증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이것은 0교시 폐지운동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www.inesia.com),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활동이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향상과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광호, 2001: 52).

이를 위해, 특정지역 소재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의 증진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본 연구는 국내의 청소년들을 모두를 다룰 수 없으므로, 청소년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의 학생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것은 한국의 상황에서 청소년=학생이라는 도식이 일반적으로 성립하고, 비학생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청소년과 비학생청소년의 양집단을 다 함께 연구하여야 완전한 연구가 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청소년의 인권증진 방안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비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증진방안은 다음 연구로 미룬다.

3. 연구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곧,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의 증진 방안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고, 특정한 지역의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 및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초의 계획에서는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을 위주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함께 행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중간보고 발표회에 이루어진 논평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상자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과정부터 대학교과정까지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대상자로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교생, 대학생 집단과 그에 대응하는 교사 또는 교수, 학부모, 지역사회 청소년전문가들의 16개 그룹을 모두 면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어진 연구기간과 예산으로 불가능하므로, 중간발표회의 논평자의 요청처럼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면접조사만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당초 예비조사는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변경된 연구계획에 따라, 문헌연구를 새롭게 하여 예비조사결과를 반영한 면접설문(안)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면접설문(안)은 초등학교생부터 문광부 청소년위원회 위원과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고등학교생과 대학생,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정이 계속되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면접설문으로 2002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면접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면접 대상자는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교생 및 대학생 각 3명,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

사, 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 교수 각 3명,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및 대학생 학부모 각 3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지역사회 청소년전문가 각 3명의 총 48명이었다.

이중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 곧 전문가집단은 지역청소년상담실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년상담실무를 담당하는 상근 근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목 또는 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개신교 목사, 원불교 교무 및 천주교 청소년지도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대상 활동가들이었다.

1)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이므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자본의 형성정도를 살피기 위해 이전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가정과 학교, 사회라는 독립되어 있으나 상호연계된 각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에 대해 청소년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 방안들에 효과를 동시에 조사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각각의 방안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를 각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려면, 각각의 대안들의 적절한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각각의 방안에 대해, 적절한 시행시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총 132개 문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4문항,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관련 11문항, 0교시 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 관련 2문항, 교과과정 개편관련 3문항, 청소년상담 관련 4문항, 학교 등의 청소년시설 관련 12문항, 청소년시설 내의 휴식공간 관련 8문항, 학교운영 관련 6문항, 학교 규칙 관련 10문항,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의 개선 관련 19문항, 인권교육 관련 8문항, 청소년권리 관련 홍보 관련 9문항, 청소년조직 관련 6문항, 청소년권리보호 법체계 관련 7문항, 가족간 교사-학생간 일상적 관계 관련 7문항, 청소년 노동관련 4문항,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관련 9문항, 기타 3문항이었다.

총 18개로 범주화된 총 132개 문항은 각각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효과에 대해 질문되어졌고, 또한 동시에 해당 문항의 적절한 실시시기에 대해서도 질문되어졌다.

<표 1-1> 설문영역 및 내용

설문영역	설문문항
학교운영위원회	1-1 학교운영과정에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 1-2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 참여 및 의결권 의무화 1-3 교장초빙제의 실시 1-4 교사초빙제의 실시
	2-1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 2-2 학생회 및 학급회의 활성화 2-3 학생 대표에 대한 리더십 교육 의무화 및 자치기구 대표자에 대한 리더십 교육 여건마련 2-4 학생 대표 및 자치기구의 예산 편성안 부여와 심의 과정에의 학생 참여 보장 2-5 학생회장 출마자격의 제한을 완화 2-6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동의 보장 및 양성화

설문영역	설문문항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2-7 학교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과 예산 지원 2-8 학교 동아리 활동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관계 구축 2-9 학생 자치 동아리의 지도교사제를 교사·청소년지도자·학부모·지역사회지도자 등을 포함한 “멘터(mentor)제”로 변경 2-10 학교축제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2-11 특별활동 활성화 및 지원
0교시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3-1 0교시 수업의 강제적 실시 폐지 및 희망학생에 의한 자율적 실시 3-2 야간자율학습 강제적 실시 폐지 및 희망학생에 의한 자율적 실시
교과과정 개편	4-1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 4-2 교과과정 개편에서 학생의견 반영 4-3 교과과정 개편에서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
청소년 상담	5-1 학생상담의 실질적 운영 5-2 학교내 청소년상담 전문교사 혹은 학교사회사업가의 배치 의무화 5-3 독립적인 학생 상담공간의 확보 및 인테리어 보강 5-4 청소년 인권상담소나 전화상담소를 충실히 운영

설문영역	설문문항
학교 등의 청소년시설	6-1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 6-2 학교시설물을 새로 짓고, 더 짓거나 고칠 때에 학생의견 반영 6-3 학교시설물의 새로 짓고, 더 짓거나 고칠 때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반영 6-4 학교시설 내에 온실이나 화원 등을 포함한 아름다운 공간을 가꿈 6-5 학교시설물은 다양한 활용도를 고려하여 지음으로써 이용 효율을 극대화 6-6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성인활용 때 청소년 이용 보호 장치 마련 6-7 청소년 대상시설 및 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청소년이용객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경 6-8 청소년 이용 시설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가까운 곳에 설치 6-9 청소년 이용시설 다양화 6-10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 6-11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청소년의견 반영 6-12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 지역사회 의견 반영
청소년시설 내의 휴식공간	7-1 학생 또는 청소년을 위한 휴게실의 확보 및 실제적 운용 7-2 여학생 또는 여자 청소년을 위한 휴게실의 확보 및 실제적 운용 7-3 학교내의 교사 휴게실 확보 및 실제적 활용 7-4 학교내의 교사들의 교과별 연구실 확보

설문영역	설문문항
청소년시설 내의 휴식공간	7-5 청소년 시설 내의 청소년지도자들만의 휴게실 확보 및 실제적 활용 7-6 학교 등 청소년 시설내의 사용되지 않는 각종 공간을 학생과 교사 또는 청소년지도자를 실질적으로 위한 공간으로 활용 7-7 학교식당에서의 학생과 교사(수)에 대한 별도의 공간 철폐 7-8 학교식당에서의 학생과 교사(수)에 대한 차별적 식단 철폐
학교운영	8-1 학급당 인원감축 8-2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 8-3 수업일수의 실질적 감축 8-4 학생들의 이수 교과목수를 실질적으로 감축 8-5 정상 청소년들과 장애 청소년들과의 통합수업 또는 프로그램 실시 8-6 여성 장애우 외국인노동자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자리 마련
학교규칙	9-1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 9-2 교사와 학생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구속받는 전체 총회의 구성을 교칙에 명기 9-3 교칙 및 규칙의 완화 9-4 교칙 및 규정 신설 및 개정과정에 학생의견 반영 9-5 교칙 및 규정 신설 및 개정과정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의견반영 9-6 두발 및 복장규정의 완화 9-7 두발 및 복장규정의 완화에 학생의견 반영 9-8 두발 및 복장규정의 완화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의견반영 9-9 교칙 및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주관적 판단 배제 9-10 교칙 및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 철저

설문영역	설문문항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의 개선	10-1 문화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
	10-2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
	10-3 내신성적의 반영 극대화 노력
	10-4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10-5 점수경쟁 부추기는 언론의 자정노력 요구
	10-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교육 강화
	10-7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철저한 단속
	10-8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
	10-9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
	10-10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
	10-11 청소년육성기금의 자금 원천을 경마와 주세에서 다른 조세원천으로 변경
	10-12 놀이공원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을 부과함
	10-13 학교 앞의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거나 차로 폭을 좁혀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10-14 변화되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교사상과 비전을 교사들이 공유하도록 여건을 조성
	10-15 영어회화나 컴퓨터를 잘하는 교사보다, 창의적인 교수법의 시행 및 학생 상담, 동아리활동 지원을 잘하는 교사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사평가 기준의 수정
	10-16 청소년지도사 담당 학생수 감축
	10-17 청소년 담당 공무원들의 재임기간을 연장함
	10-18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대안학교 설립의 허용
	10-19 의무교육과정에서의 홈스쿨링의 제한적 허용

설문영역	설문문항
인권교육	11-1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 11-2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 11-3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 의무화 11-4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11-5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11-6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및 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 과정에 인권과목 필수 배정 11-7 현직 교사의 연수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 배정 11-8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
청소년 권리 관련 홍보	12-1 청소년들의 자기권리 주장능력의 강화 12-2 청소년 권리에 대한 비디오제작 배급 12-3 청소년 권리에 대한 TV프로그램 방영 12-4 청소년들과 관련된 각종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 12-5 청소년 관련 홍보책자 발간 후 가정 학교 관계기관 배포 12-6 청소년 관련 홍보물의 각종 기관에의 배포 의무화 12-7 학교 신문 및 학교방송에 대한 제작 편성권 보호 12-8 청소년 제작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12-9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지원
청소년 조직	13-1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 청소년조직구성 지원 강화 13-2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홍보 13-3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공문처리를 의무화 13-4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예산 및 공간지원 13-5 청소년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정 과정 투명화 13-6 각급 청소년위원회 위원과 행정부 책임자들과의 정례적인 만남 및 결과 반영 의무화

설문영역	설문문항
청소년 권리보호 법체계	14-1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을 청소년 지향적으로 고치거나 만들 14-2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 14-3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 의무화 14-4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반영 14-5 가정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 14-6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 14-7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공개
가족간 교사-학생간 일상적 관계	15-1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 15-2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15-3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적 언행 금지 15-4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 15-5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 15-6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 15-7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청소년 노동	16-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노동에 대한 차별금지 16-2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채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 16-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 16-4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기구 설립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17-1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 강화

설문영역	설문문항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17-2 각급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대표 청소년지도자 관련 공무원의 각급 회의 개최 17-3 각급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대표 청소년지도자 관련공무원(장학사 포함)의 각급 회의 의무화 17-4 지역사회내의 교육청 학교 청소년단체 각종 청소년시설 및 종교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17-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 17-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계와 이를 위한 지원 17-7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증대 17-8 청소년들의 NGO 참여기회 확대 17-9 종교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의 청소년관련 부문에서 청소년에게 자율권과 예산편성권 부여
기타	18-1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사이트개설 및 운영지원 18-2 청소년대상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시각에서의 관리 18-3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상급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

2) 조사대상자의 특성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초등학교	학생	1 명 (33.3%)	2 명 (66.7%)	3 명 (100.0%)	0	0	0	0	3 명
	학부모	0	3 명 (100.0%)	0	0	1 명 (33.3%)	2 명 (66.7%)	0	3 명
	교사	2 명 (66.7%)	1 명 (33.3%)	0	0	3 명 (100.0%)	0	0	3 명
	지역사회지도자	0	3 명 (100.0%)	0	0	2 명 (66.7%)	1 명 (33.3%)	0	3 명
중학교	학생	2 명 (66.7%)	1 명 (33.3%)	3	0	0	0	0	3 명
	학부모	1 명 (33.3%)	2 명 (66.7%)	0	0	0	3 명 (100.0%)	0	3 명
	교사	1 명 (33.3%)	2 명 (66.7%)	0	0	2 명 (66.7%)	1 명 (33.3%)	0	3 명
	지역사회지도자	2 명 (66.7%)	1 명 (33.3%)	0	2 명 (66.7%)	0	1 명 (33.3%)	0	3 명
고등학교	학생	2 명 (66.7%)	1 명 (33.3%)	3	0	0	0	0	3 명
	학부모	0	3 명 (100.0%)	0	0	0	3 명 (100.0%)	0	3 명
	교사	2 명 (66.7%)	1 명 (33.3%)	0	0	0	2 명 (66.7%)	1 명 (33.3%)	3 명
	지역사회지도자	2 명 (66.7%)	1 명 (33.3%)	0	0	0	3 명 (100.0%)	0	3 명
대학교	학생	1 명 (33.3%)	2 명 (66.7%)	0	3 명 (100.0%)	0	0	0	3 명
	학부모	2 명 (66.7%)	1 명 (33.3%)	0	0	0	3 명 (100.0%)	0	3 명
	교사	3 명 (100.0%)	0	0	0	0	3 명 (100.0%)	0	3 명
	지역사회지도자	3 명 (100.0%)	0	0	0	1 명 (33.3%)	2 명 (66.7%)	0	3 명
합계	학생	6 명 (50.0%)	6 명 (50.0%)	9 명 (75.0%)	3 명 (25.0%)	0	0	0	12 명
	학부모	2 명 (16.67%)	10 명 (83.33%)	0	0	1 명 (8.33%)	11 명 (91.67%)	0	12 명
	교사	8 명 (66.7%)	4 명 (33.3%)	0	0	5 명 (41.67%)	6 명 (50.0%)	1 명 (8.33%)	12 명
	지역사회지도자	7 명 (58.33%)	5 명 (41.67%)	0	2 명 (16.67%)	3 명 (25.00%)	7 명 (58.33%)	0	12 명

4. 용어정리

사회적 자본: 개인의 목적지향적 행동 속에서 접근되고 동원되어질 수 있는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을 수행하는 자원.

청소년 인권: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 인권: 청소년인권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사회구조, 곧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의 관계 구조와, 그 속에 내재된 청소년인권증진방안들에 대한 기대효과 및 이를 구체화하는 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와 규범 및 의무감.

구체적으로, (1) 인권이 보편적임을 의식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적인 대접을 해줌으로써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도록 해야 하겠다는 의무감 등.

(2) 인권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과,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 등.

(3) 사회 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과 지도자들 사이와 해당 집단 사이에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는 찾아서라도 해야한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속 등.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
2. 청소년 인권
3.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인권
4.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 인권 증진방안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

최근 들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활용 가능한 자원의 종류들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이 사회학으로부터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광범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은유(metaphor)로까지 사용되고 있다.(Sandefur and Laumann, 1998: 481).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체계화한 인물로 거론되는 Coleman은 개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종류로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3가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자본으로서, 그러한 자본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산적 자본이다(최순규, 2001: 442).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 법에 의해 소유권이 정해지거나 신체와의 분리불가능성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한 주체가 소유하게 되는 것과 달리, 관계를 맺는 양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 어떤 것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되지만, 사회적 자본은 무엇인가의 생산과 관련된 능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경목, 1996: 266).

Coleman(1988)의 논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rational actor)”이다. 합리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 저러한 것들을 활용

하게 되는데, 이때 행위자의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function)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치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인 사회구조도, 합당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적 자본이 된다(Sandefur and Laumann, 1998: 481-482).

Coleman(1988)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형태에는 신뢰(trust), 효과적인 규범(effective norms) 및 자발적인 조직(voluntary organization)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 배태되어 나타난다.

Coleman식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곧, 합리적 존재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형성하는,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구조가 사회적 자본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마당발”이다. 발이 넓은 사람들, 곧 사회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발이 좁은 사람들 곧 사회적 자본을 적게 소유한 사람들보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구체적인 예가 소위 “마담 뚜”와 “로비스트”같은 사람들이다. 마담 뚜라 불리는 전문 결혼중매업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마당발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결혼을 주선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의 넓은 마당발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지원하는 기관이나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도모한다.

이러한 Coleman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에 대해 Sandefur와

Laumann(1998)은 3가지의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곧, 첫째 사회적 자본에는 특정한 형태가 존재하고, 둘째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화될 수 있고, 셋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상황적 제약을 받는 나름대로의 쓸모, 곧 유의도(valence)를 갖는다(Sandefur and Laumann, 1998: 483).

Coleman 이후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Granovetter는 약한 연결(weak tie)와 강한 연결(strong tie)의 개념을 제시하고, Burt는 structural hol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Granovetter가 제시한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약한 연결은 친구의 친구와 같은 것으로, 강한 연결은 친구나 친척으로 개념화할 때, 직장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할 경우에는 강한 연결보다는 약한 연결이 보다 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Sandefur and Laumann, 1998: 484). 그것은 친구의 친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가 친구나 친척이 제공하는 한정된 정보보다 직장을 구하는데는 더 쓸모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urt는 조직 구성원 사이의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른 승진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소위 structural hole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structural hole이란, 어떤 네트워크에 있어서 특정인이 아니면 서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적 매개자(mediator)의 위치를 뜻한다.

Burt는 structural hole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이 조직 안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는 이유가, 정보적 이점(information benefits)과 통제적 이점(control benefits) 때문이라

고 설명하였다. 곧,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범위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를 통하지 않으면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구멍의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예로 든 마담 뚜와 로비스트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기존의 많은 실증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승진, 업무 수행에서 감정적 피로감의 감소, 새로운 직업의 탐색, 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선정, 기업의 생존, 투자은행의 신주인수 업무, 혁신의 도입, 기업그룹의 성장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밖에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었다. Gabbay와 Leenders는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고, 사회적 구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며, 만일 특정한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부채(social liability)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최순규, 2001: 443).

하지만, 동시에 최근 들어 사회적 자본(또는 사회적 부채)이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은 크게 두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사회적 관계가 당사자에게 관련된 타인에 대한 의무수행이나 집단규범의 준수를 강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기회의 추구나 합리적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가 가진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의 획득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최순규, 2001: 445).

특정 정권 하에서 특정지역 출신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나, 판검사 등의 인사이동 때 자신보다 후배가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로 임명되면 명퇴를 해야 하는 경우, 왕조시대에 일가 중에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일족들이 모두 형벌을 받았던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재열(1996)은 이를 기업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에 의하면,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 꼭 높은 성과, 곧 효과성을 높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곧, 기업이 속한 시장의 연줄망 구조가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장간 연줄망에서 차지하는 구조의 여지가 적을수록 내부의 효율성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수익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이재열, 1996: 515). 곧, 기업이 속한 시장의 자율성이 적은 연줄망 구조가 사회적 부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의무감 (obligations) 정보(information) 그리고 규범(norms)을 제시하였다. 의무감이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다른 개인이 그에 대한 보답을 하여야 할 정신적 부채를 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란 서로가 보유한 정보를 상대방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은 사회적으로 또는 조직 내에서 지지되어야 할 규범(예: 범죄행위의 회피)이 쌍방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자본은 의도적으로 창출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산출되는 부산물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Coleman의 관점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흔히 신뢰(trust)와 상호호혜성(reciprocity)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Knoke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미시적인 수준(개인

간의 관계)의 신뢰는 기본적으로 상호호혜성 몰입 관용 협력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무감 등과같은 사회적 교환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거시적 수준(조직간 관계)의 신뢰는 관계의 구조적 조건들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최순규, 2001: 444)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Putnam(1993)은 폐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방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일반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반화는 일반화된 상호호혜성의 규범(norms of generalized reciprocity) 및 시민적 의무수행의 네트워크(networks of civic engagement)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Keobane는 특정한 상호호혜성의 규범이 확산된 상호호혜성의 규범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곧, 쌍방적 관계에서 당사자들은 특정화된 책임과 의무를 정해진 조건에서 상호간에 교환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특정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상호호혜성을 준수하려는 경험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저자들은 Fukuyama(1995)의 주장과 같이 사회적 자본이 특정한 쌍방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전체 네트워크에서 형성될 수 있는 조건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최순규, 2001: 444).

2. 청소년 인권

20세기의 참혹한 경험에 비추어,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당위적 권리이며, 제도적 권리가 아닌 도덕적 권리로서, 최대한도의 요구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도

의 기준이라는 점이 국제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이봉철, 1991: 7; 김녕, 1999: 72; 김중섭, 2001: 38).

이를 반영하여 1948년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고, 1966년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등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청소년의 인권관련 선언으로는 1923년 애글렌타인에 의해 아동권리선언의 초안이 작성된 이후, 1924년의 제네바선언, 1959년 2차 아동권리선언, 1985년 세계청소년회의 바르셀로나 선언,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1994년 청소년 카이로선언, 1995년 유엔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1996년 북경 선언, 1998년 리스본선언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다(천정웅 외, 1999: 4-11).

한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처우수준을 보면 그들에 대한 배려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의감 수준과 미래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류은숙, 1997). 그리고 선진민주국가인 유럽 청소년들은 세계인권선언의 30조 전문을 줄줄 외울 정도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김녕, 1999).

그러나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강제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하여 95년 7월의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98년 7월의 청와대 홈페이지게재사건을 일으켰다. 또한 2000년 여름에는 두발규제 폐지(No Cut)운동과, 2002년 3월에는 0교시폐지운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민주사회에 알맞은 시민’의 양성이라는 면에서, 학교 교육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 “너희에게는 인권과, 누구에게도 맞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떠드는 아이들을 몽둥이로 때릴 수는 없다(육이은, 2001)”고 한다.

체벌은 명백히 형법상의 폭행 내지 폭력행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이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가 아닌 한 '교육목적을 위한 직무상의 정당행위'로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폭력은 인격적 존재에게 가해지는 가장 야만적인 인격권 침해행위이며, 따라서 폭력을 매개로 하는 교육행위는 더 이상 학습자의 학습권 즉 인간적 성장발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신현직, 2001: 4-5).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내의 심한 처벌의 방지를 위해 제시한 체벌과 관련된 “생활규정(예시안)”에 대해(www.moe.go.kr), 국가인권위원회(2002)는 시정권고를 내렸다(www.humanrights.go.kr)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획일화된 규격 속에 갇혀 통제를 받아야 하고, 더구나 양말, 손톱까지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내지 Life-style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나 소지품 검사 등의 압수 수색에 관하여 학교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포괄적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전면적이고 자의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기본적 인권 보장 규정에 직접 위반이 된다(신현직, 2001: 5).

“말도 안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더 이상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윤민우, 2000)”“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그들에게 인권이 더 보장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를 고민

하게 해준다.

한국정부는 91년 11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92년 2월 한국아동복지 10개년 계획서를 제출하였다(노혜련, 1997). 1998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인권이 비록 서구적 가치이지만 인권사상이 아시아에서도 과거에 존재하였으며, 경제건설을 위해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법과 상충하는 국내법들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여전히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김녕, 1999: 64).

이러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로 상징되듯, 한국의 인권상황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특히 98년에 새로 제정된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이 오늘의 삶의 주인으로 마땅히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져야 함을 역설함으로써, 청소년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알렸다.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 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 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 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 10. 25.

교육부는 98년 10월 24일에 ‘학생인권선언’ 선포계획을 발표하고, 소극적 자유권과 적극적 자유권, 참여권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한 시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하였다. 학교현장에서 사상·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 적극적 자유권이 제약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선언 시안을 통한 인권신장이 크게 기대되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의 치열한 논쟁으로 학생인권선언 시안이 선포 예정일을 넘기고도 공론화되지 못하자, 자생적 인권단체인 중고등학생복지회가 98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중고등학생 인권선언서’를 발표하고, 이와 별도로 강원지역 청소년들도 ‘청소년인권선언문’을 발표하였다(이용교 등, 1999).

전문과 13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중고등학생 인권선언서

의 전문에서 학생들은 인간의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존엄성을 주장하면서 “학생의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안에 존재하며, 학생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중고등학생복지회, 1998).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의 학생 청소년들은 학교현장에서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훈육과 온정적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규율에 복종해야 학생답다는 억압적 기준에 구속되어, 교문 앞에서부터 모든 권리의 유보가 강요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입시문화와 권위주의문화는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형성하며, 반인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배경내, 1998: 137).



[그림 11-1] 교문에서 두발불량으로 벌을 받는 학생들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도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인권인식이 더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고(문성호, 정정숙: 2000: 67; 이수연과 문용우, 2000: 79-82), 계열별과 상관없이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이수연과 문용우, 2000: 79-82; 정준교, 2002a: 100-103). 특히 정준교에 의하면, 성별 계열별 학교 위치(도농)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없이 “전국적으로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정준교, 2002a: 100-103).

21세기는 인권의 세기이다(Fukuyama, 2001). 따라서 한국 고등학생들의 강제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헌법소원과 청와대 홈페이지 게재사건, 인터넷상에서의 두발규제 폐지운동(idoo.net, 2001) 및 0교시폐지운동(inesia.com, 2002) 등은 학생청소년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을 반영함과 동시에,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 수준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기범, 1997). 청소년들 가운데 비교적 나은 대접을 받는 학생들조차 어려운 인권상황에 처해있음을 생각할 때, 적지 않은 수의 비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은 더 나쁨을 말할 나위도 없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비로운 성인’의 입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배경내, 1999), 청소년들의 간절히 바라며 외치고 있는 인권신장요구는 화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3.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인권

정치적 민주화와 구분되는 ‘사회적 민주화(social democratization)’

내지 ‘사회수준에서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at the societal level)’는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국민 각자가 양도할 수 없는 인권과 자유의 향유자로 인정되는 단계로서 자유와 평등문제를 포함하는 인권의 구현과 신장이 제도의 개혁과 의식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다(김녕, 1999: 50).

인권의 추구(quest for human rights)와 정의의 요구(demand for justice)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뿐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 더 나아가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김녕, 1999: 50). 따라서 청소년, 특히 학생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교육과정상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자신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학교규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신현직, 2001: 6).

그러나 현실은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도조차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비민주성이 지적되고 있듯이, 학교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국가인권위원회, 2002.9.5)

서유럽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금지는 물론이고, 부모체벌도 금

지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매맞는데 익숙해져서 대학진학에 부작용을 줄지도 모를 벌점이라는 점수보다 오히려 매맞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곧 폭력에 대한 불감증과 함께 인권의식의 말살을 의미하는 심각성을 갖고 있다(신현직, 2001: 5).

<표 II-1>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의 일부

제 한	내 용
교육상 불가 피한 경우	▶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을 때 ▶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 ▶ 다른 학생을 이유없이 괴롭혔을 때 ▶ 남의 물건이나 물품을 고의로 손상시켰을 때 ▶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 학교가 정한 벌점을 초과했을 때
도구	▶ 직선형 나무 - 초·중학교생: 지름 1Cm내외, 길이 50Cm이하 - 고등학교생: 지름 1.5Cm내외, 길이 60Cm이하
체벌부위 및 횟수	▶ 부위: 남학생: 엉덩이 여학생: 허벅지 ▶ 횟수: 초등생: 5회 이내, 중고생: 10회 이내

자료: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서.
<http://www.kfta.or.kr/cgi-bin/data/>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이러한 괴리가 왜 발생하고 있을까? 그러한 이유 중 일부는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부채와 관련된 이유 때문이다.

Coleman식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그것을 얻게 될 때 교육적 성취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원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부모의 관심, 부모나 지역사회에 의하여 견지되고 있는 사회적 규범, 부모가 아닌 가족 내 다른 성인들의 존재 및 그들과의 유대, 청소년들의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신뢰감 등이 포함된다(김경근, 2000: 24-25).

또한 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존재가 중요하다(Putnam, 1995: 65). 그리고 신뢰감과 사람들 사이의 연대(engagement)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들이다(Putnam, 1995: 73).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유대감과 그들에 대한 신뢰감, 그들을 위한 사회적 규범 등으로 등을 전제로 하는 서로에 대한 인권의식은 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구실을 하므로, 청소년 인권도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은 청소년들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의 관심, 이들을 지지해주는 규범과 법체계, 그들 사이의 유대, 그들에 대한 신뢰감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Gabbay와 Leenders(1999)는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고, 사회적 구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며, 만일 특정한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부채(social liability)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최순규, 2001: 443).

특정 정권 하에서 특정지역 출신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나, 왕조시대에 일가 중에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일족들이 모두 형벌을 받았던 것처럼, 어리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는 무엇보다 학생중심의 교육내용이나 방식이 아니며, 교육내용이나 교육방식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는 학생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본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생은 늘 어린 존재로서 어른이 될 때까지 권리가 좀 유보되어도 된다는 전통적 아동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대학입시에 경도된 교육환경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가 모두 비정상적임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병적인 제도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있어서 이러한 병적인 제도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조혜정, 1996: 5). 곧 정당성의 위기를 겪어 온 국가권력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부패한 교육공무원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바빠서, 청렴하고 충실한 관리와 교사들은 불합리한 규칙에서나마 맡은 바 도리를 다하느라, 어머니들과 일선교사들은 각자 나름의 사랑법으로 맡은 바 도리를 다하느라, 입시 브로커들과 팀이 되어 잘 짜여진 드라마 한 편을 꾸려가고 있다.

또한 최근의 교육위기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기업의 지원과,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와 대립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폭로성 보도로 다수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증폭되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정부와 일부 언론, 정부와 교원집단, 교원집단과 학생-학부모집단, 보수적 교원집단과 진보적 교원집단 사이에 위기주범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다(전종호, 2001: 56).

이것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를 자주 빼먹고, 대학시절 공부를 못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듯 형편없는 대학성적표를 기꺼이 보여주곤 한다는 일본의 2002년 물리학 노벨상수상자 고시바 마사토시가 학생을 압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한 지적과도 같은 것이다(한겨레, 2002). 그러나 학교교육의 내용은 현재와 미래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교육의

방식도 학생중심, 학생주체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교육관과 학생관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에 민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회적 부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인권과의 관계를 Parsons식의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전체 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할 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집단 사이의 신뢰 등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자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의 권위적 운영과 특정 집단의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할 때,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집단 사이의 신뢰 등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부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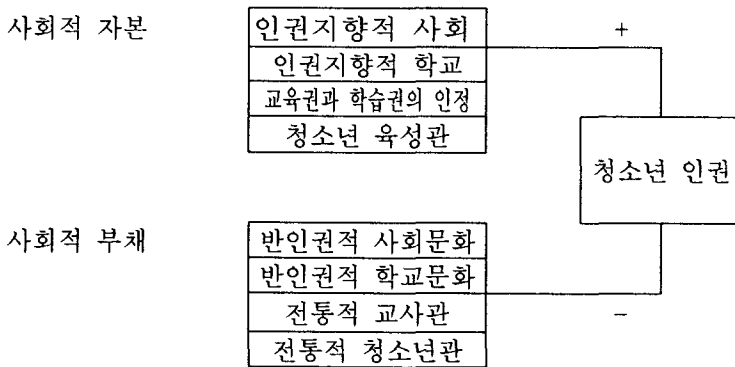
둘째, 청소년 사회를 기준으로 볼 때, 청소년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현장의 제정과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청소년관 변화시도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자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 증진에 저해가 되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반인권적 사회문화와 학교문화 및 전통적 아동관과 교육관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부채에 해당한다.

여기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보장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입시위주 교육(36.0%)과 권위주의적인 어른들(24.6%)를 지적하고, 청소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순위로 어른들의 의식변화(40.2%), 학생자치활동 확대(19.4%), 법제도 개선(18.8%) 청소년권

리상담기구 운영(9.7%) 청소년인권교육실시(8.9%)를 들은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경기도 차세대 위원회: 2002a: 15-16).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의 그림 II-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 인권에 +로 작용하는 청소년육성관이나 인권중시 요구들이나, 청소년 인권에 -로 작용하는 반인권적 사회문화 학교문화 및 전통적 교사관, 전통적 청소년관은 모두,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 인권중시 집단과 인권경시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I-2]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부채

여기서 청소년 인권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반대되는 영향을 행사하는 두 집단의 상호주관적인 이해도 각각의 행위자들이 주관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권용혁, 2002: 87)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해결 가능성이 존재한다.

곧, 두 집단의 상호주관적 이해를 논리적으로 무한히 확장하면 언어적으로 매개된 무한한 의사소통 공동체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롭고 동등한 권한을 가진 주체들로 인정됨으로써, 도구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권용혁, 2002: 87).

4.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 인권 증진방안

현재 학교 교육은 위기상태에 처해 있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넓어지고, 교육적 지도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입시와 성적이라는 획일적 목표 아래 학생의 순응을 당연시해 온 억압구조가 이완되면서 학교 교육의 붕괴적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생들에 대한 생활 규제와 학습 강화와 같은 과거의 방식만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고립화 개별화되어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으며, 점점 더 거칠어지고 타인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장기적 목표를 세우지 않는 듯 보인다.

2002년 여름에 한국의 학생들은 전염성이 강한 아폴로 눈병에 걸리면 학교에 갈 수 없기에, 자기도 이병에 걸려 학교에 안가고 싶어 눈병 걸린 사람의 눈에 댄 후, 그 손으로 자기 눈을 문지르는 등의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김인규, 2002).

꿈을 상실한 다수의 아이들은 생활에 질서가 없고 무기력해 보인다. 두발과 복장, 교내 흡연, 무단 지각과 결석, 결과, 수업 방해 등등 점차로 늘어나는 학생들의 태업과 변하지 않는 교사들의 학생관과 학생교육(지도) 방식, 낡은 학교 규정, 학교 시설 등 교육적·물리적 환경 사이의 현실적 격차 속에서 갈등과 폭력적 상황의 발생 개연성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현원일, 2001: 5-8).

그러나 교육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 행위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개인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게 하는 것이며, 개인이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서

나가는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습과 생활의 주체로 개개인을 단련시키고 올바른 가치판단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학생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현원일, 2001: 12).

따라서, 비록 현재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역할을 찾아나가고 있지도 못하지만, 교육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인권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권이 확보되고 정당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37조 1항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인권 역시 헌법적 기본권으로 서의 도덕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이봉철, 1991: 7).

왜냐하면 인권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실행은 사회적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중섭, 2001: 54). 인권문화는 인권 실행을 일상 생활에서 반영해 주는 사회적 토양이다. 나치의 인종 차별과 반 유대인 정서의 문화적 바탕에서 배태된 나치의 반인륜적 사고 방식으로 부터 침략전쟁과, 더 나아가 강제적인 성노예를 강요한 군위안부 제도 및 인간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731 부대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다(김중섭, 2001: 58).

곧 인권문화가 보편화되고 인권 중심사고가 일상화될 때, 비로소 인권이 온전히 실행되게 된다. 사회 전체가 인권을 사회의 주요 가치로 받아들이고 실제 생활에서 존중하는 문화적 바탕이 마련될 때 비로소 인권 증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

권문화는 인권 실행의 주요한 사회적 장치임에 틀림없다(김중섭, 2001: 58).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은 그 자체가 인권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인권 교육이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곧, 인권교육은 사회 구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인권신장의 역사는 지난한 투쟁과 희생의 역사였다. 사회적 인습 및 제도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인권 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아 온 제도와 인습과의 싸움이며 자신의 내부에 잠재하거나 실재하는 반인권적 요소들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교당한 지식 전달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인권적 삶을 실천하지 않는 교사의 인권 교육은 속된 삶을 추구하는 성직자의 설교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인권 교육은 대상을 교육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과정이어야 한다.

국회의원 설훈이 전국의 초중고교사 1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교사가 70.2%, 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교사가 55.3%였다. 그러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공동연구에서는 학생중 38.2%만이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한다(설훈, 2001, 4). 또한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의 경기도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77.7%에 달했다(경기도 차세대 위원회, 2002a: 17).

곧, 교사는 인권에 대해 가르쳤는데 학생은 받지 않았다고 답하는 괴리현상이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진행중인 학내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교사들의 부정기적인 ‘좋은 말씀’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이다(설훈, 2001: 4).

또한 교사들 역시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교사가 18.3%였고, 인권교육에 대해 들어본 교사도 TV 신문 잡지를 통해 얻는 사람이 70.6%, 동료교사나 인권단체 또는 교원연수를 통해서가 각각 6.8%,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 상호주관적 이해를 형성해야 할 교사들이 청소년인권에 대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사회적 부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 현행 청소년인권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며, 어른들의 의식변화와 학생자치활동의 확대 허용, 법제도 개선 등과 같이 청소년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동시적이지 않은 것들이 동시에 중첩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과 학교를 비롯한 도처에서 발견되는, 한국 사회의 비합리성은 국가 및 경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곧 한국 사회의 문제는 국가 및 경제가 너무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권용혁, 2002: 105).

따라서 전근대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근대적인 목적 합리성의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그 목적합리성을 지향하고 있는 권력과 화폐 영역의 월권 행위를 비판하고 제어하기 위해 생활세계에서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복합전략이 요구된다(권용혁, 2002: 105).

청소년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청소년 인권의 증진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청소년 인권의 저해와 관련된 사회

적 자본은 감소시키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체화한 사람들(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지도자와 주민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룰 때, 청소년 인권의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큰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의무감 (obligations) 정보(information) 그리고 규범(norms)을 제시하였다. 의무감이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다른 개인이 그에 대한 보답을 하여야 할 정신적 부채를 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란 서로가 보유한 정보를 상대방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은 사회적으로 또는 조직 내에서 지지되어야 할 규범(예: 범죄행위의 회피)이 쌍방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자본은 의도적으로 창출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산출되는 부산물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를 사회적 자본을 통한 청소년인권 증진방안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표 1과 같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 사이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사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일부의 학생 청소년들과 교사 및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 특수하게 자리하고 있는 상호호혜적인 규범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화된 규범의 구체적인 예가 청소년을 위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다.

이제까지의 청소년인권신장방안에 대해, 김혜숙 등(1999)은 학교폭력측면과 체벌 측면, 성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교육 측면 및 성폭력 해소 측면의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들은 또한 학생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방과 운영, 교원양성 및 연수교육과정의 개선과 부모교육의 내실화라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된 법제 정비도 제안하였다.

<표 II-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

구분	내용
의무감	인권이 보편적임을 의식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적인 대접을 해줌으로써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도록 해야 하겠다는 의무감 등.
정보	인권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과,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 등.
규범	사회 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과 지도자들 사이와 해당 집단 사이에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는 찾아서라도 해야한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속 등.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방안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곧 청소년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증진시켜야 할 것과 감소시켜야 할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이들을 모두 포함한 132개 방안을 만들어, 이 방안들을 실시하였을 때의 기대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 증진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신장 방안

을 모색한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므로, 상황적 맥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 때문이었다(Boggs, 2001:287).

<표 II-3>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증진대상과 감소대상

증진시켜야 할 대상	감소시켜야 할 대상
○ 청소년 육성정책 ○ 학교운영위원회/학생징계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교육관련 담당자, 지역사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 토론이 가능한 교실환경의 조성 ○ 지역사회의 정책기구예의 참여 (예: 청소년위원회 등) ○ 지역사회에의 사회봉사 참여. ○ 인권 가정 발굴 및 포상. ○ 기타	○ 청소년에 대한 통제 일변의 의식 ○ 교육행정부서의 관료적 행정풍토 ○ 교육관과 학습권의 구분에 대한 2중적 인식 ○ 학생징계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의 학생대표 참여 배제 ○ 일제시대부터 변화가 없는 교실환경(이혜영 등, 1998: 328) 및 체벌 ○ 지역사회내의 유해 환경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과, 가정 내 성폭력과 학대행위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가로막는 민법규정 ○ 기타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측정도구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특정 지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다. 이들에게 예비설문과 문헌연구를 통해 작성한 측정도구의 초안을 학생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을 물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별첨한 완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설문의 대상자들은 중고등학생 30명이었고,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해 의견을 들은 대상자들은 학생 4명, 학부모 2명, 교사 3명, 지역사회지도자 4명, 초등 4명, 중등 2명, 고등 3명, 대학 4명의 총 13명이었다.

그리고 면접의 대상자들은 학교급별로는 초등 12명 중등 12명 고등 12명 대학 12명이었고, 직업별로는 학생 12명 학부모 12명 교사 12명 지역사회의 청소년지도자 12명이었다. 이들의 나이 분포는 아래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면접대상자들의 학교급별 및 직업별 나이 분포

		사 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나이	최대나이	나이의 범위
학교 급 별	초등	12	32.25	12.60	12	49	37
	중등	12	31.42	11.62	15	44	29
	고등	12	38.67	12.43	18	50	32
	대학	12	39.08	10.47	21	49	28
직업 별	학생	12	17.17	4.06	12	24	12
	학부모	12	43.33	3.47	39	49	10
	교사	12	41.50	4.32	35	50	15
	청소년지도자	12	39.42	8.70	22	49	27
전 체		48	35.35	11.97	12	50	38

2. 측정도구

예비설문은 학생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청소년 30 명을 대상으로 권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은 중학생 중에 많았다.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도 일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예비조사 대상자 다수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조사하고자 할 때, 청소년인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종 조사와 저술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제시된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면접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청소년 중, 청소년권리 의식이 비교적 있는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의견들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면접문항들을 수정하였으며, 학부모들의 의견 역시 청소년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면접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면접문항들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각각의 질문문항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설명문항을 만들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면,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곧, “9-1.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라는 문항에 대해,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을 징계할 때에 학생이 자초지종을 밝힐 수 있는 발언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법

조항을 개정하여, 그러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주자는 방안입니다"라는 설명문을 달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9-1.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 (**설명:** 현재의 초·중·고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을 징계할 때에 학생이 자초지종을 밝힐 수 있는 발언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법조항을 개정하여, 그러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주자는 방안입니다)

<표 III-2> 구조화된 면접지의 영역별 문항수

영역	문항수	비고
(1) 학교운영위원회	4	
(2)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11	
(3) 0교시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2	
(4) 교과과정 개편	3	
(5) 청소년 상담	4	
(6) 학교 등의 청소년시설	12	
(7) 청소년시설 내의 휴식공간	8	
(8) 학교운영	6	
(9) 학교규칙	10	
(10)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의 개선	19	
(11) 인권교육	8	
(12) 청소년 권리 관련 홍보	9	
(13) 청소년 조직	6	
(14) 청소년 권리보호 법체계	7	
(15) 가족간 교사-학생간 일상적 관계	7	
(16) 청소년 노동	4	
(17)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9	
(18) 기타	3	
합 계	132	

이렇게 만들어진 면접설문의 문항들은 18개 영역의 132개 문항이었다. 곧, (1) 학교운영위원회, (2)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3) 0교시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4) 교과과정 개편, (5) 청소년 상담, (6) 학교 등의 청소년시설, (7) 청소년시설 내의 휴식공간,

(8) 학교운영, (9) 학교규칙, (10)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의 개선, (11) 인권교육, (12) 청소년 권리관련 홍보, (13) 청소년조직, (14) 청소년 권리보호 법체계, (15) 가족간 교사-학생간 일상적 관계, (16) 청소년 노동, (17)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18) 기타 영역의 18개 영역이었다.

그리고 제시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청소년권리를 위한 사회적자본의 형성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되는 3개 영역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영역에서의 의견을 물었다. 곧, 청소년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한 예로 학교운영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수렴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는 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면접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듣고, 지문을 본 후 자기 주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당 문항이 시행될 경우 학교영역에서 어떤 청소년권리신장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① 매우 효과있음 ② 효과있음 ③ 효과없음 ④ 전혀 효과없음의 항에 V표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항은 학교영역에서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한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가정영역 및 사회영역에서도 “간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곧, 학교운영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반영되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공교육 영역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된 경험을 갖게 되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하여, 가정과 사회영역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보다 잘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과정에 참여한 학부모들(교사대표로서, 학부모대표로서, 지역사회대표로서)은 자녀나 자녀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반영해준 경험을 갖게 되어, 가정영역이나 사회영역에서도 학생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친화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교운영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도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운영과정에 수렴되고 반영된다는 것을 자녀나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학부모들을 통해서건 일단 인지하게 되면, 자녀들의 의견이나 지역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보다 더 잘 수렴하고 반영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은 서로 독자적으로 구분되어 아무 관계가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청소년들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은 다른 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접 대상자들에게 주어진 각 질문에 대해, 가정영역에서의 효과에 대해, 학교영역에서의 효과에 대해, 사회영역에서의 효과에 대해 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목적지향적 행동 속에서 접근되고 동원되어질 수 있는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사회적 부채는 개인의 목적지향적 행동 속에서 접근되고 동원되어질 수 있는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역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측정은 기존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이 양친가족의 존재여부, 성인가족의 존재여부, 형제자매수, 기대교육수준, 대화빈도, 자녀교육 지원빈도, 부모가 알고 지내는 자녀친구 부모수 (김경근, 2000: 29-30)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청소년 인권의 증진방안들을 사회적 자본의 증진방안으로 인식하므로, 증진방안들을 ① 매우 효과있음 ② 효과있음 ③ 효과없음 ④

전혀 효과없음의 항에 V표를 하도록 척도화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으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청소년 현장에서 언급되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0; 20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2), 아름다운학교만들기 운동본부(2001) 등에서 청소년권리 신장방안으로 주장한 다양한 문항들을 학생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들의 의견을 들어 18개 영역 132개의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이때 각각의 질문문항들은 ① 매우 효과있음 ② 효과있음 ③ 효과없음 ④ 전혀 효과없음의 항에 V표를 하도록 척도화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면접대상자들 중에 청소년권리에 대해 초등학교생들이나 학부모들 중에는 명확한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취지문을 제시하였다.

“(면접에 앞서)

1948년에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고, 1966년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등이 잇달아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관련 선언으로 1923년 애글렌타인에 의해 아동권리선언의 초안이 작성된 이후, 1924년의 제네바선언, 1959년 2차 아동권리선언, 1985년 세계청소년회의 바르셀로나 선언,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1994년 청소년 카이로선언, 1995년 유엔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1996년 북경선언, 1998년 리스본선언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습니다.

한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처우수준을 보면 그들에 대한 배려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의감 수준과 미래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민주국가인 유럽 청

소년들은 세계인권선언의 30조 전문을 줄줄 외울 정도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획일화된 규격 속에 간헐 통제를 받아야 하고, 더구나 양말, 손톱까지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내지 Life-style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나 소지품 검사 등의 압수 수색에 관하여 학교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포괄적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전면적이고 자의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기본적 인권 보장 규정에도 직접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91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92년 2월에 한국아동복지 10개 년 계획서를 제출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법과 상충하는 국내법들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여전히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로 상징되듯, 한국의 인권상황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특히 98년에 새로 제정된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이 오늘의 삶의 주인으로 마땅히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져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자체적으로 98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중고등학생 인권선언서'를 발표하면서, "학생의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안에 존재하며, 학생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학생 청소년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권리의 주체라기 보다는 훈육과 온정적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IV. 연구결과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
2. 각 영역별 청소년권리 증진방안
3. 모든 영역에 공통되는 청소년권리 증진방안

IV. 연구결과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목적지향적 행동 속에서 접근되고 동원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목적달성에 순기능을 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사회적 부채는 개인의 목적지향적 행동 속에서 접근되고 동원되어질 수 있는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목적달성에 역기능을 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적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은, 청소년인권의 증진이란 목적 달성에 순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구조에 내재된 동원가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으로 정의되는 청소년인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친화적이며 이를 지원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려는 의지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곧, 청소년인권을 신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청소년들과 관계되는 사회관계 곧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 사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청소년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여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청소년인권의 증진을 위해 가정과 학교 및 사회라는 3영역이 서로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영역들임을 규명하고(안승환, 2002; 장윤미, 2002 등). (2) 각 영역별로 가장 효과 있다고, 사회적으로 곧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의견이 공유되는 청소년인권증진 방안들을 찾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라는 3개의 영역모두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의견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본다.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

각 영역별로 나타난 청소년인권증진방안들에 대한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작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려된 4가지 청소년권리신장 방안 중, 1-1, 1-3, 1-4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청소년권리증진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학교운영과정에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1-1)”, “교장초빙제의 실시(1-3)”, “교사초빙제의 실시(1-4)”가 가정과 학교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 사이에 통계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 참여 및 의결권 의무화(1-2)”에 대해서는 학교영역과 사회영역에서만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었다.

<표 IV-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1-1	0.393 **	0.393 **	0.397 **	1-3	0.557 **	0.588 **	0.586 **
1-2	0.238	0.193	0.415 **	1-4	0.637 **	0.462 **	0.542 **

** $p < 0.01$

(2)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관련된 11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 사이에 통계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2-7, $p<0.05$; 2-1부터 2-6, 2-8부터 2-11, $p<0.01$).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 2-2. 학생회 및 학급회의 활성화(2-1)”, “학생 대표에 대한 리더십 교육 의무화 및 자치기구 대표자에 대한 리더십 교육 여건마련(2-3)”, “학생 대표 및 자치기구의 예산 편성안 부여와 심의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2-4)”, “학생회장 출마자격의 제한을 완화(2-5)”,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동의 보장 및 양성화(2-6)”, “학교 동아리 활동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관계 구축(2-8)”, “학생 자치 동아리의 지도교사제를 교사·청소년지도자·학부모·지역사회지도자 등을 포함한 “멘터(mentor)제”로 변경(2-9)”, “학교축제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2-10)”, “특별활동 활성화 및 지원(2-11)”에 대해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통계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2-7. 학교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영역과 사회영역 사이에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5/2-1	0.613 **	0.560 **	0.707 **	11/2-7	0.319 *	0.348 *	0.114
6/2-2	0.471 **	0.479 **	0.603 **	12/2-8	0.417 **	0.462 **	0.361 *
7/2-3	0.548 **	0.430 **	0.669 **	13/2-9	0.686 **	0.689 **	0.768 **
8/2-4	0.407 **	0.366 *	0.311 *	14/2-10	0.672 **	0.606 **	0.434 **
9/2-5	0.675 **	0.626 **	0.692 **	15/2-11	0.722 **	0.679 **	0.734 **
10/2-6	0.366 **	0.439 **	0.442 **				

** $p < 0.01$, * $p < 0.05$

(3) 0교시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2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 곧 “0교시 수업의 강제적 실시 폐지 및 희망학생에 의한 자율적 실시(3-1)”와 “야간자율학습 강제적 실시 폐지 및 희망학생에 의한 자율적 실시(3-2)”에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표 IV-3> 0교시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3-1	0.758 **	0.716 **	0.708 **	3-2	0.793 **	0.849 **	0.745 **

** $p < 0.01$

(4) 교과과정 개편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된 3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 곧 “학생

이 자유롭게 교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4-1), 교과과정 개편에서 학생의견 반영(4-2), 교과과정 개편에서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4-3)”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 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0.01$).

<표 IV-4> 교과과정 개편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4-1	0.478 **	0.506 **	0.603 **	4-3	0.766 **	0.656 **	0.716 **
4-2	0.585 **	0.621 **	0.718 **				

** $p<0.01$

(5) 청소년 상담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4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 곧 “학생상담의 실질적 운영(5-1), 학교내 청소년상담 전문교사 혹은 학교사회사업가의 배치 의무화(5-2), 독립적인 학생 상담공간의 확보 및 인테리어 보강(5-3), 청소년 인권상담소나 전화상담소를 충실히 운영(5-4)”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0.01$).

<표 IV-5> 청소년 상담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5-1	0.428 **	0.715 **	0.659 **	5-3	0.649 **	0.600 **	0.675 **
5-2	0.740 **	0.557 **	0.645 **	5-4	0.797 **	0.511 **	0.625 **

** $p<0.01$

(6) 학교 등의 청소년시설

학교 등의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12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다시 말해서,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6-1), 학교시설물을 새로 짓고, 더 짓거나 고칠 때에 학생의견 반영(6-2), 학교시설물의 새로 짓고, 더 짓거나 고칠 때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반영(6-3), 학교시설 내에 온실이나 화원 등을 포함한 아름다운 공간을 가꿈(6-4), 학교시설물은 다양한 활용도를 고려하여 지음으로써 이용효율을 극대화(6-5),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성인활용 때 청소년 이용 보호 장치 마련(6-6), 청소년 대상시설 및 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청소년이용객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경(6-7), 청소년 이용 시설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가까운 곳에 설치(6-8), 청소년 이용시설 다양화(6-9),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6-10),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청소년의견 반영(6-11),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 지역사회 의견반영(6-12)”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표 IV-6> 학교 등의 청소년 시설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6-1	0.683 **	0.715 **	0.794 **	6-7	0.757 **	0.423 **	0.507 **
6-2	0.402 **	0.626 **	0.686 **	6-8	0.626 **	0.378 **	0.698 **
6-3	0.506 **	0.564 **	0.708 **	6-9	0.619 **	0.515 **	0.787 **
6-4	0.651 **	0.666 **	0.844 **	6-10	0.721 **	0.578 **	0.495 **
6-5	0.393 **	0.362 *	0.444 **	6-11	0.688 **	0.462 **	0.412 **
6-6	0.454 **	0.519 **	0.582 **	6-12	0.749 **	0.708 **	0.770 **

** $p < 0.01$

(7) 청소년시설 내의 휴식공간

학교 등의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8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다시 말해서, “학생 또는 청소년을 위한 휴게실의 확보 및 실제적 운용(7-1), 여학생 또는 여자 청소년을 위한 휴게실의 확보 및 실제적 운용(7-2), 학교내의 교사 휴게실 확보 및 실제적 활용(7-3), 학교내의 교사들의 교과별 연구실 확보 (7-4), 청소년 시설 내의 청소년지도자들만의 휴게실 확보 및 실제적 활용(7-5), 학교 등 청소년 시설내의 사용되지 않는 각종 공간을 학생과 교사 또는 청소년지도자를 실질적으로 위한 공간으로 활용(7-6), 학교식당에서의 학생과 교사(수)에 대한 별도의 공간 철폐(7-7), 학교식당에서의 학생과 교사(수)에 대한 차별적 식단 철폐(7-8)”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표 IV-7> 청소년 시설내의 휴식공간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7-1	0.637 **	0.605 **	0.693 **	7-5	0.581 **	0.797 **	0.408 **
7-2	0.612 **	0.722 **	0.742 **	7-6	0.553 **	0.621 **	0.585 **
7-3	0.698 **	0.738 **	0.825 **	7-7	0.717 **	0.777 **	0.753 **
7-4	0.471 **	0.681 **	0.539 **	7-8	0.693 **	0.697 **	0.772 **

** $p < 0.01$

(8) 학교운영

학교운영과 관련된 6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다시 말해서, “학급당 인원감축(8-1),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수업일수의 실질적 감축(8-3), 학생들의 이수 교과목수를 실질적으로 감축(8-4), 정상 청소년들과 장애 청소년들과의 통합수업 또는 프로그램 실시(8-5), 여성 장애우 외국인노동자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자리 마련(8-6)”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표 IV-8> 학교운영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45/7-1	0.512 **	0.583 **	0.696 **	48/7-4	0.626 **	0.835 **	0.680 **
46/7-2	0.417 **	0.418 **	0.671 **	49/7-5	0.673 **	0.498 **	0.585 **
47/7-3	0.700 **	0.679 **	0.651 **	50/7-6	0.736 **	0.743 **	0.746 **

** $p < 0.01$

(9) 학교규칙

학교규칙과 관련된 10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0.01$).

다시 말해서,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9-1), 교사와 학생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구속받는 전체 총회의 구성을 교칙에 명기(9-2), 교칙 및 규칙의 완화(9-3), 교칙 및 규정 신설 및 개정과정에 학생의견 반영(9-4), 교칙 및 규정 신설 및 개정과정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반영(9-5), 두발 및 복장규정의 완화(9-6), 두발 및 복장규정의 완화에 학생의견 반영(9-7), 두발 및 복장규정의 완화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견반영(9-8), 교칙 및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주관적 판단 배제(9-9), 교칙 및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 철저(9-10)”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0.01$).

<표 IV-9> 학교규칙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9-1	0.270	0.508 **	0.701 **	9-6	0.700 **	0.642 **	0.583 **
9-2	0.592 **	0.657 **	0.673 **	9-7	0.709 **	0.778 **	0.652 **
9-3	0.423 **	0.616 **	0.656 **	9-8	0.809 **	0.766 **	0.825 **
9-4	0.372 **	0.606 **	0.624 **	9-9	0.740 **	0.757 **	0.874 **
9-5	0.707 **	0.634 **	0.764 **	9-10	0.876 **	0.834 **	0.838 **

** $p<0.01$

(10)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의 개선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19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다시 말해서, “문화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10-1),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10-2), 내신성적의 반영 극대화 노력(10-3),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점수경쟁 부추기는 언론의 자정노력 요구(10-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교육 강화(10-6),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철저한 단속(10-7),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8),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9),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10-10), 청소년육성기금의 자금 원천을 경매와 주세에서 다른 조세원천으로 변경(10-11), 놀이공원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청소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을 부과함(10-12), 학교 앞의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거나 차로 폭을 좁혀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10-13), 변화되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교사상과 비전을 교사들이 공유하도록 여건을 조성(10-14), 영어회화나 컴퓨터를 잘하는 교사보다, 창의적인 교수법의 시행 및 학생 상담, 동아리활동 지원을 잘하는 교사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사평가 기준의 수정(10-15), 청소년지도사 담당 학생수 감축(10-16), 청소년 담당 공무원들의 재임기간을 연장함(10-17),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대안학교 설립의 허용(10-18), 의무교육과정에서의 홈스쿨링의 제한적 허용(10-19)”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

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p<0.01$).

<표 IV-10>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환경의 개선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10-1	0.777 **	0.686 **	0.710 **	10-11	0.903 **	0.827 **	0.807 **
10-2	0.564 **	0.619 **	0.827 **	10-12	0.938 **	0.630 **	0.667 **
10-3	0.692 **	0.690 **	0.799 **	10-13	0.802 **	0.672 **	0.482 **
10-4	0.829 **	0.838 **	0.844 **	10-14	0.438 **	0.566 **	0.756 **
10-5	0.895 **	0.774 **	0.829 **	10-15	0.778 **	0.812 *	0.789 **
10-6	0.836 **	0.726 **	0.879 **	10-16	0.665 **	0.644 **	0.617 **
10-7	0.936 **	0.800 **	0.838 **	10-17	0.563 **	0.550 **	0.740 **
10-8	0.939 **	0.754 **	0.803 **	10-18	0.795 **	0.579 **	0.739 **
10-9	0.828 **	0.653 **	0.812 **	10-19	0.781 **	0.783 **	0.896 **
10-10	0.933 **	0.869 **	0.850 **				

** $p<0.01$

(11) 인권교육

인권교육과 관련된 8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0.01$).

다시 말해서,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11-1),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11-2),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 의무화(11-3),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11-4),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대상 인권교육 의무화(11-5),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및 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에 인권과목 필수 배정(11-6), 현직 교사의 연수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 배정(11-7),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

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0.01$).

<표 IV-11> 인권교육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11-1	0.587 **	0.562 **	0.815 **	11-5	0.762 **	0.775 **	0.883 **
11-2	0.759 **	0.712 **	0.876 **	11-6	0.683 **	0.742 **	0.750 **
11-3	0.660 **	0.642 **	0.797 **	11-7	0.555 **	0.712 **	0.775 **
11-4	0.585 **	0.639 **	0.847 **	11-8	0.698 **	0.709 **	0.755 **

** $p<0.01$

(12) 청소년 권리관련 홍보

청소년 권리관련 홍보와 관련된 9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0.01$).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의 자기권리 주장능력의 강화(12-1), 청소년 권리에 대한 비디오제작 배급(12-2), 청소년 권리에 대한 TV프로그램 방영(12-3), 청소년들과 관련된 각종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12-4), 청소년 관련 홍보책자 발간 후 가정 학교 관계기관 배포(12-5), 청소년 관련 홍보물의 각종 기관에의 배포 의무화(12-6), 학교 신문 및 학교방송에 대한 제작 편성권 보호(12-7), 청소년 제작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12-8),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지원(12-9)”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0.01$).

<표 IV-12> 청소년 권리관련 홍보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12-1	0.843 **	0.808 **	0.779 **	12-6	0.946 **	0.817 **	0.823 **
12-2	0.886 **	0.841 **	0.884 **	12-7	0.705 **	0.711 **	0.867 **
12-3	0.862 **	0.872 **	0.866 **	12-8	0.540 **	0.614 **	0.770 **
12-4	0.638 **	0.732 **	0.750 **	12-9	0.689 **	0.540 **	0.662 **
12-5	0.831 **	0.691 **	0.811 **				

** $p < 0.01$

(13) 청소년조직

청소년 조직과 관련된 6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다시 말해서,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 청소년조직구성 지원강화(13-1),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홍보(13-2),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공문처리를 의무화(13-3),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예산 및 공간지원(13-4), 청소년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정 과정 투명화(13-5), 각급 청소년위원회 위원과 행정부 책임자들과의 정례적인 만남 및 결과 반영 의무화(13-6)”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표 IV-13> 청소년 조직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97/12-1	0.785 **	0.668 **	0.759 **	100/12-4	0.875 **	0.667 **	0.722 **
98/12-2	0.691 **	0.705 **	0.640 **	101/12-5	0.864 **	0.690 **	0.722 **
99/12-3	0.594 **	0.553 **	0.719 **	102/12-6	0.863 **	0.744 **	0.805 **

** $p < 0.01$

(14) 청소년 권리보호 법체계

청소년 권리보호 법체계와 관련된 7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다시 말해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을 청소년 지향적으로 고치거나 만들(14-1),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14-2),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 의무화(14-3),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 반영(14-4), 가정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14-5),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공개(14-7)”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표 IV-14> 청소년 권리보호 법체계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103/13-1	0.794 **	0.577 **	0.808 **	107/13-5	0.557 **	0.762 **	0.587 **
104/13-2	0.859 **	0.662 **	0.721 **	108/13-6	0.856 **	0.419 **	0.569 **
105/13-3	0.830 **	0.564 **	0.599 **	109/13-7	0.882 **	0.654 **	0.637 **
106/13-4	0.767 **	0.576 **	0.520 **				

** $p < 0.01$

(15) 가족간 교사-학생간 일상적 관계

가족간 교사-학생간 일상적 관계와 관련된 7개의 청소년권리 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15-1),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적 언행 금지(15-3),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15-4),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15-5),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15-6),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15-7)”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표 IV-15> 가족간 교사-학생간 일상적 대화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110/14-1	0.376 **	0.380 **	0.866 **	114/14-5	0.438 **	0.702 **	0.583 **
111/14-2	0.601 **	0.575 **	0.884 **	115/14-6	0.516 **	0.806 **	0.573 **
112/14-3	0.695 **	0.600 **	0.877 **	116/14-7	0.555 **	0.857 **	0.766 **
113/14-4	0.733 **	0.411 **	0.564 **				

** $p < 0.01$

(16) 청소년 노동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4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노동에 대한 차별금지(16-1),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채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16-2),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16-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기구 설립(16-4)”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표 IV-16> 청소년노동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117/15-1	0.858 **	0.476 **	0.450 **	119/15-3	0.600 **	0.568 **	0.467 **
118/15-2	0.692 **	0.512 **	0.458 **	120/15-4	0.807 **	0.684 **	0.604 **

** $p < 0.01$

(17)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와 관련된 9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 < 0.01$).

다시 말해서,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강화(17-1), 각급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대표 청소년지도자 관련공무원의 각급 회의 개최(17-2), 각급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대표 청소년지도자 관련공무원(장학사 포함)의 각급 회의 의무화(17-3), 지역사회내의 교육청 학교 청소년단체 각종 청소년시설 및 종교기관의 네트워크 구성(17-4),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강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17-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계와 이를 위한 지원(17-6),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증대(17-7), 청소년들의 NGO 참여기회 확대(17-8), 종교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의 청소년관련 부문에서 청소년에게 자율권과 예산편성권 부여(17-9)”에 대한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의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17-1부터 17-8까지, $p < 0.01$; 17-8 $p < 0.05$).

<표 IV-17>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관련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121/16-1	0.761 **	0.705 **	0.849 **	126/16-6	0.811 **	0.637 **	0.606 **
122/16-2	0.754 **	0.778 **	0.849 **	127/16-7	0.878 **	0.600 **	0.647 **
123/16-3	0.668 **	0.657 **	0.897 **	128/16-8	0.824 **	0.522 **	0.601 **
124/16-4	0.811 **	0.669 **	0.683 **	129/16-9	0.703 **	0.331 *	0.652 **
125/16-5	0.745 **	0.784 **	0.787 **				

** $p < 0.01$, * $p < 0.05$

(18) 기타

기타 3개, 곧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사이트개설 및 운영지원(18-1), 청소년대상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시각에서의 관리(18-2),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상급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18-3)”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의 모두에 대해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곧,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사이에 의미있는 통계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p<0.01$).

<표 IV-18> 기타 권리증진방안들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인권증진방안	가정-학교	가정-사회	학교-사회
130/17-1	0.947 **	0.798 **	0.706 **	132/17-3	0.828 **	0.653 **	0.812 **
131/17-2	0.939 **	0.754 **	0.803 **				

** $p<0.01$

위의 18개 영역 132개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방안들에 대해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사회영역에서 기대되는 효과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곧, 한 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이 다른 영역에서의 권리증진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한 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수준이 향상되려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인권수준이 향상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사회적인 인권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벽에 부딪히고 어려울 경우,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노력이 간접적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간접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강윤미, 2002 참조).

2. 각 영역별 청소년권리 증진방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한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를 미침을 확인했어도,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부터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그 효과가 더 크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 증진방안

먼저 가정영역에서 확인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지도자들이 효과가 상대적 클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132개의 청소년인권증진 방안 모두를 살피는 것은 의미가 적으므로, 설문 문항에서 매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1과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2의 중간값이 1.5보다 그 값이 작아 효과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정영역에서는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14-5)”과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

(14-1)”이 가정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가장 효과가 클 것 (1.25점)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표 IV-19> 대상에 따른 가정 영역에서의 권리증진방안들의 기대효과

순위	초등청소년	중등청소년	고등청소년	대학청소년	전체청소년
1	14-6 (1.17)	15-1 (1.17)	15-2 (1.25)	11-1 (1.25)	14-5 (1.25)
2	15-1 (1.25)	11-8 (1.25)	15-1 (1.33)	11-2 (1.25)	15-1 (1.25)
3	10-4 (1.33)	10-6 (1.33)	10-4 (1.42)	15-1 (1.25)	15-2 (1.33)
4	12-8 (1.33)	14-5 (1.33)	11-8 (1.42)	15-2 (1.25)	14-2 (1.42)
5	15-5 (1.33)	15-2 (1.33)	15-3 (1.42)	5-2 (1.33)	10-4 (1.46)
6	2-1 (1.42)	6-8 (1.42)	6-1 (1.50)	10-6 (1.33)	11-4 (1.46)
7	2-9 (1.42)	6-9 (1.42)	10-5 (1.50)	11-3 (1.33)	11-8 (1.46)
8	8-1 (1.42)	6-10 (1.42)	11-4 (1.50)	11-5 (1.33)	14-3 (1.46)
9	10-8 (1.42)	11-1 (1.42)	12-1 (1.50)	11-5 (1.33)	14-6 (1.46)
10	11-1 (1.42)	11-4 (1.42)	14-5 (1.50)	14-5 (1.33)	11-1 (1.48)
11	16-4 (1.42)	15-6 (1.42)		14-6 (1.33)	15-3 (1.48)
12	5-1 (1.50)	5-2 (1.50)		6-7 (1.42)	
13	5-2 (1.50)	8-4 (1.50)		9-1 (1.42)	
14	6-4 (1.50)	8-6 (1.50)		10-8 (1.42)	
15	6-10 (1.50)	10-4 (1.50)		10-9 (1.42)	
16	7-8 (1.50)	10-13 (1.50)		11-4 (1.42)	
17	8-2 (1.50)	12-3 (1.50)		11-8 (1.42)	
18	10-5 (1.50)	12-9 (1.50)		15-3 (1.42)	
19	10-6 (1.50)	15-3 (1.50)		5-1 (1.50)	
20	10-16 (1.50)	16-3 (1.50)		10-2 (1.50)	
21	11-4 (1.50)	17-6 (1.50)		14-1 (1.50)	
22	14-5 (1.50)			14-7 (1.50)	
23	14-7 (1.50)				
24	15-2 (1.50)				
25	16-2 (1.50)				
26	17-6 (1.50)				
27	17-7 (1.50)				
28	17-8 (1.50)				
29	18-1 (1.50)				
30	18-3 (1.50)				
31	7-2 (1.50)				

그 뒤를 이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1.33점),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14-2, 1.42점)”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46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11-4), 1.46점)”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 1.46점)”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 의무화(14-3, 1.46점)”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46점)”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11-1, 1.48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적 언행 금지(15-3, 1.48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친부모나 양부모에 의한 가혹행위와 성범죄가 청소년들의 인권침해에 큰 이슈가 되고 있음이 반영되고, 가정영역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에 인권신장의 요체가 있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모의 언행과 입시위주의 환경 및 성폭력적 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요구가 청소년인권신장에 걸림돌이 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효과적임을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지도자들은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청소년대상의 민주시민의식 교육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정과정의 참여 등이 또한 가능하도록 됨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가정영역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필요함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민법개정과 성폭력 방지 및 입시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가정영역 이외의 사회영역과 관련된 것들이 가정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대단히 긴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대상학생별로 범주화하여 구분하여 보면, 초등학생 청소년과 중학생 청소년, 고등학생 청소년 및 대학생 청소년들

은 발달시기와 생활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권리신장방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대상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초등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 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17점)”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초등학생들과 초등학생의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지역사회에서의 초등생대상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기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15-1, 1.25점)”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33점)” “청소년 제작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12-8, 1.33점)”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15-5, 1.33점)”이 그 다음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청소년 제작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가 가정영역에서의 초등학생 청소년들의 청소년권리신장 방안으로 큰 기대효과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청소년 제작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의 기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 보편화된 디지털 카메라, 이동전화기에의 디지털카메라 장착, 화상통신 등의 영향을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이 받는 소위 영상미디어세대라는 점과,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교육방송이나 수업용제작 방송물 등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가 제시된 것은, 발달시기적으로 처음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고, 학교생활이 가정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면접과정에서 초등학생 청소년들의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학생의견 무시에 대해 대단히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중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서는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 시간 많이 확보(15-1, 1.17점)”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중학생들 중학생들의 학부모들 중학교 교사들 지역사회에서의 중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기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 1.25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교육 강화(10-6, 1.33점)”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가정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요체음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중학생 시기가 되면 초등학생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이 청소년인권신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교육강화가 청소년인권증진방안으로 나타난 이유는,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분위기의 초등학교 과정을 경험한 학생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이 강한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이고,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강화는 왕따 문제를 비롯한 학교내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의 반영과,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는 세대로 인식되는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보다 많이 부여한다는 것은 마치 아기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 1.25점)”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부모들 고등학교 교사들 지역사회에서의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기대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15-1, 1.33점)” “입시 위주의 교육 탈피(10-4, 1.42점)”이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권리신장에 긴요함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이 청소년인권 증진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고등학생 세대가 입시위주의 각박한 환경 속에서 인생최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이를 비교적 부담없이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영역이고, 이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부모세대와이 갈등이 자칫 폭력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확보나 입시위주 환경 탈피가 청소년권리신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은 미성년세대인 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정영역에서의 인권신장의 요체는 부모자녀간의 대화임을 나타내고, 또한 고등학생 청소년들과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들이 겪는 숱한 어려움들이 바로 입시위주의 각박한 환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11-1, 1.25점)”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11-2, 1.25점)”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15-1, 1.25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 1.25점)”이 가정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대학생 대학원의 학부모들 대학교수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기대되고 있었다.

여기서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과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이 나타난 까닭은, 한국의 상황에서 대학입

시라는 전쟁준비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난 다음의 세대이며, 성인초입세대이기도 한 대학생 청소년 세대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을 회고할 때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의 교육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인성교육에 인권교육이 함께 접목되었더라면, 그 험한 세월을 좀더 쉽게 지나쳤을 것이라는 생각과, 눈앞에 보여지는 후배세대의 꿈직해 보이는 삶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과 환경만 달라졌을 뿐 실상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면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점에 대한 발견으로 오는 허탈함 등이 동시에 작용한 듯하다.

또한 동시에 “부모 자녀간의 대화시간 확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이 나타난 이유는, 대학생 청소년들도 아직은 부모의 우산 밑에서 생활하는 자녀세대인 대학생 청소년들에게도 가정영역에서 보다 큰 권리를 누리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 증진방안

두번째로 학교영역에서 확인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청소년지도자들이 효과가 상대적 클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132개의 청소년인권증진 방안 모두를 살피는 것은 의미가 적으므로, 설문 문항에서 매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1과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2의 중간값이 1.5보다 그 값이 작아 효과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영역에서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1.21점)”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

지도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학급당 인원감축(8-2, 1.27점)”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동의 보장 및 양성화(2-6, 1.31점)”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9-1, 1.33점)”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33점)”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15-5, 1.33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15-6, 1.33점)”이 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지도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여기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이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학교영역에서의 학생 청소년들의 권리신장은 대부분 이들과 일상적으로 접하는 교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교사에게 맡기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방안도 효과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와 함께 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긴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학급당 인원감축”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들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학급당 인원이 줄여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대화시간 증가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차별적 언행이 함께 수반되어야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들이다.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교사 지역사회지도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동의 보장 및 양성

화”가 제시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양고등학교나 풍문여자고등학교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활발한 학생동아리의 활동은 그 구성부터 학교의 여건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출발점은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이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인적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나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동아리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학생동아리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양성화하려는 작업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의 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대한 큰 기대효과의 공감대는 정부로 하여금 이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IV-20> 대상에 따른 학교 영역에서의 권리증진방안들의 기대효과

순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전체
1	8-2 (1.08)	8-2 (1.08)	10-4 (1.17)	2-6 (1.0)	8-2 (1.21)
2	8-1 (1.17)	6-10 (1.17)	6-1 (1.25)	5-1 (1.08)	8-1 (1.27)
3	11-7 (1.17)	8-1 (1.17)	15-5 (1.25)	5-2 (1.08)	2-6 (1.31)
4	10-4 (1.25)	7-4 (1.25)	2-6 (1.33)	9-1 (1.08)	9-1 (1.33)
5	10-16 (1.25)	11-8 (1.25)	2-7 (1.33)	2-2 (1.17)	10-4 (1.33)
6	15-5 (1.25)	15-6 (1.25)	9-4 (1.33)	10-14 (1.17)	15-5 (1.33)
7	1-1 (1.33)	2-2 (1.33)	11-8 (1.33)	11-2 (1.17)	15-6 (1.33)
8	2-1 (1.33)	5-3 (1.33)	12-1 (1.42)	11-3 (1.17)	2-7 (1.35)
9	2-9 (1.33)	6-11 (1.33)	1-2 (1.42)	11-5 (1.17)	5-1 (1.35)
10	5-2 (1.33)	11-1 (1.33)	2-1 (1.42)	8-2 (1.25)	5-2 (1.35)
11	5-3 (1.33)	2-6 (1.42)	8-1 (1.42)	2-7 (1.25)	2-2 (1.37)
12	6-4 (1.33)	2-7 (1.42)	8-2 (1.42)	6-7 (1.25)	11-8 (1.38)
13	10-13 (1.33)	5-1 (1.42)	9-1 (1.42)	10-8 (1.25)	5-3 (1.40)

14	15-6 (1.33)	6-1 (1.42)	10-13 (1.42)	11-1 (1.25)	11-2 (1.42)
15	17-7 (1.33)	7-3 (1.42)	10-16 (1.42)	11-8 (1.25)	11-3 (1.42)
16	2-2 (1.42)	9-1 (1.42)	11-3 (1.42)	2-5 (1.33)	6-1 (1.44)
17	2-7 (1.42)	10-4 (1.42)	11-6 (1.42)	5-3 (1.33)	10-6 (1.44)
18	5-1 (1.42)	10-5 (1.42)	15-6 (1.42)	6-1 (1.33)	10-13 (1.44)
19	6-9 (1.42)	10-6 (1.42)	17-1 (1.42)	7-2 (1.33)	9-3 (1.46)
20	7-4 (1.42)	11-2 (1.42)	17-3 (1.42)	8-1 (1.33)	10-4 (1.46)
21	7-8 (1.42)	11-4 (1.42)	5-1 (1.50)	8-6 (1.33)	10-16 (1.46)
22	8-4 (1.42)	15-2 (1.42)	5-2 (1.50)	9-2 (1.33)	11-5 (1.46)
23	9-1 (1.42)	15-5 (1.42)	9-3 (1.50)	9-3 (1.33)	2-1 (1.48)
24	9-3 (1.42)	17-6 (1.42)	10-2 (1.50)	10-6 (1.33)	7-4 (1.48)
25	10-2 (1.42)	1-2 (1.50)	10-5 (1.50)	11-4 (1.33)	1-2 (1.50)
26	10-3 (1.42)	3-1 (1.50)	10-18 (1.50)	12-1 (1.33)	10-2 (1.50)
27	10-9 (1.42)	5-2 (1.50)	11-2 (1.50)	14-5 (1.33)	10-9 (1.50)
28	10-14 (1.42)	6-7 (1.50)	11-7 (1.50)	14-6 (1.33)	11-1 (1.50)
29	11-3 (1.42)	6-8 (1.50)	17-2 (1.50)	15-6 (1.33)	14-6 (1.50)
30	12-9 (1.42)	7-2 (1.50)		17-1 (1.33)	15-2 (1.50)
31	14-6 (1.42)	7-2 (1.50)		2-3 (1.42)	17-1 (1.50)
32	14-7 (1.42)	7-7 (1.50)		2-10 (1.42)	
33	15-1 (1.42)	9-2 (1.50)		6-4 (1.42)	
34	17-8 (1.42)	10-2 (1.50)		7-4 (1.42)	
35	1-2 (1.50)	10-7 (1.50)		7-8 (1.42)	
36	2-4 (1.50)	10-8 (1.50)		9-9 (1.42)	
37	2-6 (1.50)	10-13 (1.50)		9-10 (1.42)	
38	2-10 (1.5)	12-9 (1.50)		10-16 (1.42)	
39	2-11 (1.50)	13-4 (1.50)		12-3 (1.42)	
40	6-3 (1.50)	14-1 (1.50)		14-1 (1.42)	
41	6-6 (1.50)	14-6 (1.50)		15-2 (1.42)	
42	7-2 (1.50)			15-5 (1.42)	
43	7-7 (1.50)			17-2 (1.42)	
44	9-4 (1.50)			2-1 (1.50)	
45	9-5 (1.50)			2-8 (1.50)	
46	9-10 (1.50)			2-9 (1.50)	
47	10-5 (1.50)			7-1 (1.50)	
48	10-6 (1.50)			7-6 (1.50)	
49	10-8 (1.50)			7-7 (1.50)	
50	11-5 (1.50)			9-7 (1.50)	

순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전체
51	11-6 (1.50)			9-8 (1.50)	
52	13-5 (1.50)			10-4 (1.50)	
53	15-2 (1.50)			10-7 (1.50)	
54	16-4 (1.50)			10-13 (1.50)	
55	17-1 (1.50)			10-15 (1.50)	
56	18-1 (1.50)			10-18 (1.50)	
57				12-7 (1.50)	
58				13-2 (1.50)	
59				14-7 (1.50)	
60				15-1 (1.50)	
61				15-7 (1.50)	
62				16-3 (1.50)	
63				17-5 (1.50)	
64				17-6 (1.50)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가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의 학교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입시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를 대상학생별로 범주화하여 구분하여 보면, 초등학교 청소년과 중학생 청소년, 고등학생 청소년 및 대학생 청소년들은 발달시기와 생활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권리신장방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대상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범주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1.08점)”가 초등학교 영역에서 가장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초등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학급당 인원감축(8-1, 1.17점)” “현직 교사의 연수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 배정(11-7, 1.17점)” “입시위

주의 교육 탈피(10-4, 1.25점)” “청소년지도사 담당 학생수 감축(10-16, 1.25점)”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15-5, 1.25점)”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이 초등학교에서의 제일 큰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최초로 경험하는 의무 공교육기간이 초등학교 기간동안 초등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받는 큰 영향을 고려할 때, 교사들이 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을 담당함으로써 학생 1명당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초등학교 영역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감축” “현직 교사 연수과정 중에 인권과목 필수배정”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가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초등학교에서의 교사의 커다란 영향력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소년지도사의 담당 학생수 감축이 논의된 것은, 다른 학교급별의 청소년들보다 초등학교 시절의 아동 청소년들이 수련시설과 같은 곳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거나, 아직까지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에 청소년지도사들로부터 보다 큰 관심과 지도를 얻기를 바라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학교 학생청소년들의 범주에서도 초등학교 착생청소년들에서처럼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1.08점)”가 초등학교 범주에서 가장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중학생 중학생의 학부모 중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중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6-10, 1.17점)” ““학급당 인원감축(8-1, 1.17점)” “학교내의 교사들의 교과별 연구실 확보(7-4, 1.25점)” “청소년의 권

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 1.25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15-6, 1.25점)”등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청소년들의 범주에서처럼,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이 중학교에서의 제일 큰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보다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중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중학생들을 교사들이 보다 적게 담당함으로써 학생 1명당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학교 영역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감축”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 언행 주의”가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교사1인당 학생수의 감축과 함께 “학교내의 교사들의 교과별 연구실 확보”가 효과적인 중학교 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학생청소년들의 권리는 교사들의 권리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는 것이라는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정래, 2002; 190-218).

이와 함께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가 효과적인 청소년권리증진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튀는 청소년들에게 책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만 주어질 경우에 대한 기성세대의 우려가 반영된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준다. 곧, 청소년의 권리와 함께 책임을 교육하는 방안의 효과에 대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 대상은 학생들 자신과 학교영역 밖에서 학생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었다(효과: 1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긴 교사들이 오히려 그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생각하고 있었다(효과: 1.67점). 이러한 점은 역설적으로 학생

청소년들의 책임감 있는 권리증진에 대해 가장 관심있는 층이 바로 학생 자신들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은 면접문항 완성을 위한 수정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고 민감한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이, 청소년권리신장의 방안을 찾는 본 연구에서는 반드시 권리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본 문항 자체를 직접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들은 기성세대의 우려와 달리,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들의 인권을 권리와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성세대가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해준다.

고등학교 학생청소년들의 범주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17점)”이 고등학교 영역에서 가장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부모 고등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6-1, 1.25점)”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15-5, 1.25점)”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동의 보장 및 양성화(2-6, 1.33점)” “학교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과 예산 지원(2-7, 1.33점)” “교칙 및 규정 신설 및 개정과정에 학생 의견 반영(9-4, 1.33점)”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 1.33점)”이 고등학교 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 방안으로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가 고등학교 영역에서 청소년권리증진을 위한 최대 효과가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현행 고등학교가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준비로 파행상태에 있기 때문임을 학생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의 청소년지도자 모두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동의 보장 및 양성화” “학교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과 예산 지원” “교칙 및 규정 신설 및 개정과정에 학생의견 반영”이 고등학교 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 신장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은,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교교육이 정상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및 인성계발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들이 절실히 필요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고등학교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청소년인권증진방안으로 모두에 의해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가 제시되고 있음은, 이들이 여전히 교사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신분임과, 교사들을 통해 인권증진의 많은 부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고등학교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증진방안으로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와 함께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 방안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 모두가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서는,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

동의 보장 및 양성화(2-6, 1점)”이 대학교 청소년들의 범주에서 가장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대학생 대학생의 학부모 대학교수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생 대상의 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학생상담의 실질적 운영(5-1, 1.08점)” “학교내 청소년상담 전문교사 혹은 학교사회사업가의 배치 의무화(5-2, 1.08점)”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9-1, 1.08점)”이 상대적으로 청소년인권에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공감되고 있었다.

대학생 청소년 범주에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방안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청소년인권증진방안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경험한 결과, 고등학교이하 상황에서도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다 향상될 것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상담의 실질적 운영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교사 혹은 학교사회사업가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채 대학과 학과의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할 때,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하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충실한 상담이 행해질 경우 이것이 청소년들의 삶에 보다 인권지향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이 제시된 것은 대학에서는 학생징계를 위해 반드시 학생들의 소명을 듣도록 되어 있음을 잘 알기에, 고등학교 이하의 과정에서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된 학생 청소년이 자신이 소명할 기회를 갖지

조차 못한다는 것은 반인권적 절차임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이 크게 신장되는 상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학생 대학생들의 학부모 대학교수 지역사회에서 대학생을 상대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공감되기 때문이다.

3)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 증진방안

세 번째로 지역사회영역에서 확인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지도자들이 효과가 상대적 클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132개의 청소년인권증진 방안 모두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적으므로, 설문 문항에서 매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1과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2의 중간값이 1.5보다 그 값이 작아 효과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영역에서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25점)”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16-2, 1.27점)”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6-1, 1.35점)”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6-10, 1.35점)”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8, 1.33점)”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11-2, 1.33점)”등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가 선정된 것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가 야기시킨 논란이 그 한 이유가 된 듯하다. 특히 외국에서처럼 청소년들이 성폭력의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제도가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표Ⅳ-21> 대상에 따른 사회 영역에서의 권리증진방안들의 기대 효과

순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전체
1	14-7 (1.08)	8-1 (1.25)	6-1 (1.17)	14-6 (1.08)	14-6 (1.25)
2	16-2 (1.08)	8-2 (1.25)	16-2 (1.17)	6-7 (1.17)	16-2 (1.27)
3	8-2 (1.17)	6-10 (1.33)	10-13 (1.25)	9-1 (1.17)	6-1 (1.35)
4	14-6 (1.17)	10-6 (1.33)	10-4 (1.33)	10-8 (1.17)	6-10 (1.35)
5	16-3 (1.17)	10-13 (1.33)	11-2 (1.33)	11-2 (1.17)	10-8 (1.35)
6	16-4 (1.17)	14-5 (1.33)	11-3 (1.33)	5-2 (1.25)	11-2 (1.35)
7	2-9 (1.25)	14-6 (1.33)	11-8 (1.33)	6-10 (1.25)	8-2 (1.35)
8	5-4 (1.25)	15-2 (1.33)	11-8 (1.33)	7-2 (1.25)	16-3 (1.38)
9	6-5 (1.25)	6-1 (1.42)	12-1 (1.33)	10-9 (1.25)	14-7 (1.40)
10	10-8 (1.25)	9-1 (1.42)	16-3 (1.33)	11-5 (1.25)	9-1 (1.42)
11	11-7 (1.25)	10-4 (1.42)	2-6 (1.42)	14-7 (1.25)	10-4 (1.42)
12	12-9 (1.25)	10-5 (1.42)	6-6 (1.42)	16-2 (1.25)	10-6 (1.42)
13	16-1 (1.25)	10-8 (1.42)	6-8 (1.42)	6-1 (1.33)	11-3 (1.42)
14	17-7 (1.25)	10-9 (1.42)	6-10 (1.42)	10-6 (1.33)	12-9 (1.42)
15	6-9 (1.33)	11-1 (1.42)	10-5 (1.33)	11-1 (1.33)	17-7 (1.42)
16	7-2 (1.33)	11-2 (1.42)	10-17 (1.42)	11-3 (1.33)	11-1 (1.44)
17	8-1 (1.33)	11-8 (1.42)	10-18 (1.42)	13-2 (1.33)	16-1 (1.44)
18	10-6 (1.33)	13-2 (1.42)	11-1 (1.42)	14-1 (1.33)	16-4 (1.44)
19	17-6 (1.33)	15-6 (1.42)	11-5 (1.42)	15-2 (1.33)	17-6 (1.44)
20	2-8 (1.42)	17-6 (1.42)	12-9 (1.42)	16-1 (1.33)	5-2 (1.46)
21	5-1 (1.42)	5-1 (1.50)	14-6 (1.42)	17-1 (1.33)	8-1 (1.46)

순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전체
22	5-3 (1.42)	5-2 (1.50)	16-4 (1.42)	5-1 (1.42)	10-13 (1.46)
23	6-6 (1.42)	5-4 (1.50)	17-1 (1.42)	6-5 (1.42)	11-5 (1.46)
24	6-10 (1.42)	6-7 (1.50)	17-7 (1.42)	6-11 (1.42)	15-2 (1.48)
25	7-8 (1.42)	7-7 (1.50)	17-8 (1.42)	8-6 (1.42)	5-2 (1.48)
26	10-4 (1.42)	8-6 (1.50)	2-8 (1.50)	10-18 (1.42)	13-2 (1.48)
27	10-7 (1.42)	10-1 (1.50)	2-11 (1.50)	11-8 (1.42)	14-5 (1.48)
28	10-16 (1.42)	10-7 (1.50)	5-2 (1.50)	13-4 (1.42)	2-9 (1.50)
29	11-3 (1.42)	10-10 (1.50)	6-7 (1.50)	13-5 (1.42)	5-4 (1.50)
30	12-6 (1.42)	11-4 (1.50)	6-9 (1.50)	14-5 (1.42)	6-6 (1.50)
31	13-5 (1.42)	12-3 (1.50)	8-2 (1.50)	16-3 (1.42)	6-7 (1.50)
32	13-6 (1.42)	12-9 (1.50)	8-5 (1.50)	17-5 (1.42)	6-9 (1.50)
33	14-2 (1.42)	14-1 (1.50)	8-6 (1.50)	17-7 (1.42)	10-9 (1.50)
34	15-1 (1.42)	15-3 (1.50)	11-4 (1.50)	18-1 (1.42)	10-18 (1.50)
35	15-2 (1.42)	17-8 (1.50)	14-1 (1.50)	2-8 (1.50)	11-8 (1.50)
36	17-8 (1.42)	18-2 (1.50)	14-7 (1.50)	7-1 (1.5)	17-1 (1.50)
37	18-1 (1.42)		16-1 (1.50)	8-5 (1.50)	17-8 (1.50)
38	17-5 (1.45)		16-2 (1.50)	9-2 (1.50)	
39	2-7 (1.50)		17-2 (1.50)	10-1 (1.50)	
40	6-1 (1.50)		17-6 (1.50)	10-4 (1.50)	
41	6-4 (1.50)			10-7 (1.50)	
42	9-1 (1.50)			11-4 (1.50)	
43	10-2 (1.50)			12-1 (1.50)	
44	10-13 (1.50)			12-3 (1.50)	
45	11-2 (1.50)			12-9 (1.50)	
46	12-3 (1.50)			14-2 (1.50)	
47	12-8 (1.50)			14-4 (1.50)	
48	13-2 (1.50)			15-3 (1.50)	
49	14-5 (1.50)			16-4 (1.50)	
50	15-3 (1.50)			17-4 (1.50)	
51	15-4 (1.50)			17-6 (1.50)	
52	17-1 (1.50)				

이와 함께,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의 방안으로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와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지도자들에 의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한 사회에서의 인권수준의 향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권이 부여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쁘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들에게 가능한 공평하게 인권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방안 속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수준 향상방안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와 같은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와,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이 효과가 클 것으로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으로 노동하고 있으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놀이 및 공연 공간이 지역사회 내에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노래방이나 PC방 또는 연습장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상황이 고려된 듯하다.

또한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의 효과가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학교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들이 청소년들 자신과 타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인권교육과 함께 하게 될 때, 인권의식을 가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수준 향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수준의 향상에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이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를 대상학생별로 범주화하여 구분하여 보면, 초등학교생 청소년과 중학생 청소년, 고등학생 청소년 및 대학생 청소년들은 발달시기와 생활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권리신장방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대상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범주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공개(14-7, 1.08점)”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16-2, 1.08점)”이 초등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서 가장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학부모 초등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초등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1, 1.17점)”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17점)”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16-3, 1.17점)”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기구 설립(16-4, 1.17점)”이 상대적으로 사회영역에서 효과적인 청소년 인권신장의 방안으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여기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공개”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가 제기된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선도하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미흡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초등학생들과 초등학생의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그 심각함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제기된 것은, 전단지 배포 등과 같은 형태의 청소년 노동이 초등학생에게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의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 노동을 통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은 경우들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이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증진에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기된 것은, 초 등학생들의 경우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교 외지도 등이 보다 더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인식된 듯하다.

중학생들의 범주에서는, “학급당 인원감축(8-1, 1.25점)”과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1.25점)”이 중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 속한 사회영역에서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클 것으로 중학생 중학생의 학부모 중학교의 교사 및 지역 사회에서의 중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6-10, 1.33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교육 강화(10-6, 1.33점)” “학교 앞의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거나 차로 폭을 좁혀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10-13, 1.33점)” “가장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14-5, 1.33점)”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33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 심(15-2, 1.33점)”이 상대적으로 사회영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인권증진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범주에서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 방안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모두에 의해 기대되는 첫 번째가 “학급당 인원감축”과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이란 점은 시사적이다.

곧, 앞에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영역은 홀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영역 및 학교영역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중학생 청소년들의 경우는 고등학생들만큼은 아니지만 초등학생에 비하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비하면 학교상황이 보다 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모습이 강하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의 왕따 문제 상호구타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면접대상자들은 중학생 청소년 또래에 있어서의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은 학교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 청소년들을 지금보다 더 나은 교사환경에서 응대할 수 있으면, 학교영역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연히 사회영역에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이러한 추론은 사회영역에서 청소년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다른 방안들이 가정영역과 관계된 방안들(예:가장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이라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밖에 중학생 청소년 범주에서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연계교육 제도, 학교앞 횡단보도를 과속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는 제도 및 지역사회 내에 공연 및 운동공간 의무적 설치 등이 제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의 효과적 방안으로, 학교영역에서의 교사의 교육여건 개선, 가정에서의 가정의 폭력적 언행 개선, 기타 환경적인 요소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중학생 범주에서 나타난 것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의 인

지가 더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인 듯하다.

고등학생들의 범주에서는,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6-1, 1.17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16-2, 1.17점)”이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 속한 사회영역에서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클 것으로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부모 고등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학교 앞의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거나 차로 폭을 좁혀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10-13, 1.25점)”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33점)”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11-2, 1.33점)”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 의무화(11-3, 1.33점)”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 1.33점)” “청소년들의 자기권리 주장능력의 강화(12-1, 1.33점)”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16-3, 1.33점)”이 사회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 지역사회에서 고등학생을 상대하는 청소년지도자에게서 인식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의 범주에서와는 달리,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제기된 것은 고등학생 범주에 속한 청소년들이 발달단계나 생활사건에 있어서나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곧, 중학생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를 효과적인 청소년권리

중진방안으로 생각하는 반면,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 속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보다 더 성숙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또한 초등학생들과는 또 다른 다양한 실제적인 청소년 노동에 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 고등학생을 상대하는 지역사회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지원체계로서의 감시체계를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입학이라는 커다란 전투를 앞에 두고 모든 삶이 그것에 매여 있고 전 사회가 여기에 매여있기에, 당연히 “입시위주의 교육탈피”가 사회영역에서도 청소년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밤늦게 까지 공부하고 귀가하거나 새벽일찍 아침밥도 못먹고 허겁지겁 학교를 향하다가 학교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적지 않으므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의 과속차량 질주 금지 장치에 대해서도 효과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의 마련과,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자기권리 주장능력의 강화와,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과 함께, 책임있는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한과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는 것이 사회영역에서도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부모 고등학교교사 지역사회에서 고등학생을 상대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학생들의 범주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08점)”가 대학생 청소년들의 범주에 속한

사회영역에서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클 것으로 대학생 대학생의 학부모 대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청소년 대상시설 및 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청소년이용객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경(6-7, 1.17점)”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9-1, 1.17점)”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8, 1.17점)”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 (11-2, 1.33점)”이 사회영역에서 청소년들의 권리신장에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대학생 대학생의 학부모 대학교수 지역사회에서 대학생을 상대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학생 범주에 속한 청소년들은 대학입시라는 험난한 고개를 무사히 넘어온 생존자들이다. 따라서 대학생 청소년들 및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학부모 교수 청소년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관조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영역에서 청소년인권이 신장되려면, 대학생 청소년들의 인권도 신장될 수 있어야 하겠지만, 험난한 세월을 인권사각지대에서 보내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인권증진방안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멀쩡히 지어져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정작 학생 청소년들이 학교를 파한 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시간이 다 되어버리는 우스운 현실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며, 학생 징계과정에서는 당연히 징계대상 학생 청소년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까지 수없이 받았던 인성교육이 차라리 인권교육이었더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인

성교육과 인권교육이 접목된 것이었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을 촉구한다.

3. 모든 영역에 공통되는 청소년권리 증진방안

위에서는 (1) 특정한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를 미침을 확인했고, (2)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안들의 효과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제는 각 영역에 따로 적용될 수 있는 청소년인권증진 방안이 아닌, 가정과 학교와 사회라는 3가지 영역에서의 효과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본다.

앞에서 가정과 학교 및 사회영역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지도자들이 효과가 상대적 클 것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설문에서 매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1과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2의 중간 값인 1.50보다 그 값이 작아 효과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50보다 그 값이 작아 효과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결과가 아래의 <표 IV-22>와 같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총 16개 영역의 44개의 방안이 시행되면 가정오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지도자들의 의해 공통적으로 기대되었다.

(1) 학생자치 활동 및 동아리활동 관련:

“학생 자치 동아리의 지도교사제를 교사·청소년지도자·학부

모·지역사회지도자 등을 포함한 “멘터(mentor)제”로 변경(2-9)”

<표 IV-22 > 가정 학교 및 사회 영역에서의 권리증진방안들의 기대효과

청소년권리 증진 방안들		적용 영역들		
일련번호	내 용 들	가정	학교	사회
2-9	학생 자치 동아리의 지도교사제를 교사·청소년지도자·학부모·지역사회지도자 등을 포함한 “멘터(mentor)제”로 변경	초등 (1.42)	초등(1.33) 대학 (1.42)	초등 (1.25)
4-1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	대학 (1.50)	대학 (1.08)	초등 (1.42) 중등 (1.50)
5-2	학교내 청소년상담 전문교사 혹은 학교사회사업가의 배치 의무화	초등 (1.50) 중등 (1.50)	전체 (1.35) 초등 (1.33) 고등 (1.50)	전체 (1.46) 중등 (1.50) 고등 (1.50) 대학 (1.25)
6-1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	가정 (1.50)	전체 (1.44) 중등 (1.42) 고등 (1.25) 대학 (1.33)	전체 (1.35) 초등 (1.50) 중등 (1.42) 고등 (1.17) 대학 (1.33)
6-4	학교시설 내에 온실이나 화원 등을 포함한 아름다운 공간을 가꿈.	초등 (1.50)	초등 (1.33) 대학 (1.42)	초등 (1.50)
6-7	청소년 대상시설 및 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청소년이용객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경	대학 (1.42)	중등 (1.50) 대학 (1.25)	중등 (1.50) 고등 (1.50) 대학 (1.17)
6-8	청소년 이용 시설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가까운 곳에 설치	중등 (1.42)	중등 (1.50)	고등 (1.42)
6-9	청소년 이용시설 다양화	중등 (1.42)	초등 (1.42)	초등 (1.33) 고등 (1.50)
6-10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	초등 (1.50) 중등 (1.42)	중등 (1.17)	전체 (1.35) 초등 (1.42) 중등 (1.33) 고등 (1.42) 대학 (1.25)
7-2	여학생 또는 여자 청소년을 위한 휴게실의 확보 및 실제적 운용	초등 (1.50)	초등(1.50) 중등(1.50)	초등(1.33) 대학(1.25)

청소년권리 증진 방안들		적용 영역들		
일련 번호	내 용 들	가정	학교	사회
7-8	학교식당에서의 학생과 교사에 대한 차별적 식단 철폐	초등 (1.50)	초등 (1.42) 대학 (1.42)	초등(1.42)
8-1	학급당 인원감축	초등 (1.42)	전체 (1.27) 초등 (1.17) 중등 (1.17) 고등 (1.42) 대학 (1.33)	전체 (1.46) 초등 (1.17) 중등 (1.25)
8-2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	초등 (1.50)	전체 (1.21) 초등 (1.08) 중등 (1.08) 고등 (1.42) 대학 (1.25)	전체 (1.38) 중등 (1.25) 고등 (1.50)
8-6	여성 장애우 외국인노동자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자리 마련	중등 (1.50)	대학 (1.33)	중등 (1.50) 고등 (1.50) 대학 (1.42)
9-1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	대학 (1.42)	전체 (1.33) 초등 (1.42) 중등 (1.42) 고등 (1.42) 대학 (1.08)	전체 (1.42) 초등 (1.50) 중등 (1.42) 대학 (1.17)
10-2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	대학 (1.50)	초등 (1.42) 중등 (1.50) 고등 (1.50)	초등 (1.50)
10-4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전체 (1.46) 초등 (1.33) 중등 (1.50) 고등 (1.42)	전체 (1.33) 초등 (1.25) 중등 (1.42) 고등 (1.17) 대학 (1.42)	전체 (1.42) 초등 (1.42) 중등 (1.42) 고등 (1.25) 대학 (1.50)
10-5	점수경쟁 부추기는 언론의 자정노력 요구	초등 (1.50) 고등 (1.50)	초등 (1.50) 중등 (1.42) 고등 (1.50)	중등 (1.42) 고등 (1.42) 대학 (1.33)
10-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교육 강화	초등 (1.50) 중등 (1.33) 대학 (1.33)	전체 (1.44) 초등 (1.50) 중등 (1.42) 대학 (1.33)	전체 (1.42) 초등 (1.33) 중등 (1.33)

청소년권리 증진 방안들		적용 영역들		
일련 번호	내 용 들	가정	학교	사회
10-8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	초등 (1.42) 대학 (1.42)	초등 (1.50) 중등 (1.50) 대학 (1.25)	전체 (1.35) 초등 (1.25) 중등 (1.42) 대학 (1.17)
10-9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	대학 (1.42)	초등 (1.42) 대학 (1.25)	중등 (1.42) 대학 (1.25)
10-13	학교 앞의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거나 차로 폭을 좁혀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중등 (1.50)	전체 (1.44) 초등 (1.33) 중등 (1.50) 고등 (1.42) 대학 (1.42)	전체 (1.46) 초등 (1.50) 중등 (1.33) 고등 (1.25)
10-16	청소년지도사 담당 학생수 감축	초등 (1.50)	전체 (1.46) 초등 (1.25) 고등 (1.42) 대학 (1.42)	초등 (1.42)
11-1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	전체 (1.48) 초등 (1.42) 중등 (1.42) 대학 (1.25)	전체 (1.50) 중등 (1.33) 대학 (1.25)	전체 (1.44) 중등 (1.42) 고등 (1.42) 대학 (1.33)
11-2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	대학 (1.25)	전체 (1.42) 중등 (1.42) 고등 (1.50) 대학 (1.17)	전체 (1.35) 초등 (1.50) 중등 (1.42) 고등 (1.25) 대학 (1.17)
11-3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청소년 인권 교육 의무화	대학 (1.33)	전체 (1.42) 초등 (1.42) 고등 (1.42) 대학 (1.17)	전체 (1.42) 초등 (1.42) 고등 (1.25) 대학 (1.33)
11-4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전체 (1.46) 초등 (1.50) 중등 (1.42) 고등 (1.50) 대학 (1.42)	중등 (1.42) 대학 (1.33)	중등 (1.50) 고등 (1.50) 대학 (1.50)

청소년권리 증진 방안들		적용 영역들		
일련 번호	내 용 들	가정	학교	사회
11-5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대학 (1.33)	전체 (1.46) 초등 (1.50) 대학 (1.17)	전체 (1.46) 고등 (1.42) 대학 (1.25)
11-8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	전체 (1.46) 중등 (1.25) 고등 (1.42) 대학 (1.42)	전체 (1.38) 중등 (1.25) 고등 (1.33) 대학 (1.25)	중등 (1.42) 고등 (1.25) 대학 (1.42)
12-1	청소년들의 자기권리 주장능력의 강화	고등 (1.50)	고등 (1.42) 대학 (1.33)	고등 (1.25) 대학 (1.50)
12-3	청소년 권리에 대한 TV프로그램 방영	중등 (1.50)	대학 (1.42)	초등 (1.50) 중등 (1.50) 대학 (1.50)
12-9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 지원	중등 (1.50)	초등 (1.42) 중등 (1.50)	초등 (1.25) 중등 (1.50) 고등 (1.42) 대학 (1.50)
14-1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 한 법을 청소년 지향적으로 고치거 나 만들	대학 (1.50)	중등 (1.50) 대학 (1.42)	중등 (1.50) 고등 (1.50) 대학 (1.33)
14-5	가장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 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	전체 (1.25) 초등 (1.50) 중등 (1.33) 고등 (1.50) 대학 (1.33)	대학 (1.33)	전체 (1.48) 초등 (1.50) 중등 (1.33) 대학 (1.42)
14-6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	전체 (1.46) 초등 (1.17) 대학 (1.33)	초등 (1.42) 중등 (1.50) 대학 (1.33)	전체 (1.25) 초등 (1.17) 중등 (1.33) 고등 (1.42) 대학 (1.08)
14-7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공개	초등 (1.50) 대학 (1.50)	초등 (1.42) 대학 (1.42)	전체 (1.40) 초등 (1.08) 고등 (1.50) 대학 (1.25)

청소년권리 증진 방안들		적용 영역들		
일련 번호	내 용 들	가정	학교	사회
15-2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전체 (1.33) 초등 (1.50) 중등 (1.33) 고등 (1.25) 대학 (1.25)	초등 (1.50) 중등 (1.42) 대학 (1.42)	전체 (1.46) 초등 (1.42) 중등 (1.33)
15-6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	중등 (1.42)	전체 (1.33) 초등 (1.33) 중등 (1.25) 고등 (1.42) 대학 (1.33)	중등 (1.42)
16-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	중등 (1.50)	대학 (1.42)	전체 (1.38) 초등 (1.17) 고등 (1.25) 대학 (1.42)
16-4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기구 설립	초등 (1.42)	초등 (1.50)	전체 (1.44) 초등 (1.17) 고등 (1.42) 대학 (1.50)
17-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계와 이를 위한 지원	초등 (1.50) 중등 (1.50)	중등 (1.42) 대학 (1.42)	전체 (1.44) 초등 (1.33) 중등 (1.42) 고등 (1.50) 대학 (1.50)
17-7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증대	초등 (1.50)	초등 (1.33)	전체 (1.42) 초등 (1.25) 고등 (1.42) 대학 (1.42)
17-8	청소년들의 NGO 참여기회 확대	초등 (1.50)	초등 (1.42)	전체 (1.50) 초등 (1.42) 중등 (1.50) 대학 (1.42)
18-1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사 이트개설 및 운영지원	초등 (1.50)	초등 (1.50)	초등 (1.42) 대학 (1.42)

(2) 교과과정 개편 관련: 1 개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4-1)”

(3) 청소년 상담관련: 1 개

“학교내 청소년상담 전문교사 혹은 학교사회사업가의 배치 의무화(5-2)”

(4) 학교 등의 청소년 시설 관련: 7 개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 (6-1)”

“학교시설 내에 온실이나 화원 등을 포함한 아름다운 공간을 가꿈(6-4)”

“청소년 대상시설 및 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청소년이용객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경(6-7)”

“청소년 이용 시설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가까운 곳에 설치(6-8)”

“청소년 이용시설 다양화(6-9)”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 (6-10)”

(5) 청소년 시설 내의 휴식공간 관련: 2 개

“여학생 또는 여자 청소년을 위한 휴게실의 확보 및 실제적 운용(7-2)”

“학교식당에서의 학생과 교사(수)에 대한 차별적 식단 철폐(7-8)”

(6) 학교운영 관련: 3 개

“학급당 인원감축(8-1)”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여성 장애우 외국인노동자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자리 마련(8-6)”

(7) 학교 규칙 관련: 1 개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9-1)”

(8)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의 개선 관련: 7 개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10-2)”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점수경쟁 부추기는 언론의 자정노력 요구(10-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교육 강화(10-6)”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8)” “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9)”

“학교 앞의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거나 차로 폭을 좁혀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10-13)”

“청소년지도사 담당 학생수 감축(10-16)”

(9) 인권교육 관련: 4 개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11-1)”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11-2)”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 의무화(11-3)”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11-4)”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대상 인권교육 의무화(11-5)”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

(10) 청소년 권리 관련 홍보: 3 개

“청소년들의 자기권리 주장능력의 강화(12-1)”

“청소년 권리에 대한 TV프로그램 방영(12-3)”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지원(12-9)”

(11) 청소년 권리보호 법체계 관련: 3 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을 청소년 지향적으로 고치거나 만들(14-1)”

“가장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14-5)”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공개(14-7)”

(12) 가족간 교사-학생간 일상적 대화 관련: 2 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15-6)”

(13) 청소년 노동 관련: 2 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16-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기구 설립(16-4)”

(14)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관련: 3 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계와 이를 위한 지원(17-6)”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증대(17-7)”

“청소년들의 NGO 참여기회 확대(17-8)”

(15) 기타: 1 개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사이트개설 및 운영지원(18-1)”

이상과 같이, 44개의 방안들은, 그것들이 실시될 때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영역에서 동시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 효과를 어느정도(본연구에서는 1.50 이하)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및 제언

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

IMF 사태이후의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라는 개념에 의지하고 있다. 원래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활용 가능한 자원의 종류들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회학으로부터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어, 이제는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광범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은유(metaphor)로까지 사용되고 있다(Sandefur and Laumann, 1998: 481).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함께 개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3 가지 종류 중 하나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말을 창안한 것으로 알려진 Coleman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자본으로서, 그러한 자본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산적 자본이다(최순규, 2001: 442).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 법적 소유권이나 신체와의 분리불가능성에 의해 특정한 주체에 의해 소유되는 것과 달리, 관계를 맺는 양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 생산을 위한 투자와 관련되지만, 사회적 자본은 생산능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경목, 1996: 266).

Coleman(1988)은 “합리적인 존재(rational actor)”인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 저러한 것들을 활용할 때, 그러한 행위자의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function)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형태에는 신뢰(trust), 효과적인 규범(effective norms) 및 자발적인 조직(voluntary organization)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 배태되어 나타난다.

Coleman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Granovetter는 약한 연결(weak tie)와 강한 연결(strong tie)의 개념을 제시하고, Burt는 structural hol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Gabbay와 Leenders(1999)는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고, 사회적 구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며, 만일 특정한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부채(social liability)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최순규, 2001: 443).

이제까지의 많은 실증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승진, 업무수행에서 감정적 피로감의 감소, 새로운 직업의 탐색, 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선정, 기업의 생존, 투자은행의 신주인수 업무, 혁신의 도입, 기업그룹의 성장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청소년인권

20세기의 참혹한 경험에 비추어,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당위적 권리이며, 제도적 권리가 아닌 도덕적

권리로서, 최대한도의 요구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이라는 점이 국제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이봉철, 1991: 7; 김녕, 1999: 72; 김중섭, 2001: 38).

이를 반영하여 1948년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고, 1966년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등에 이어, 다양한 청소년 인권관련선언들도 잇달아 발표되었다(천정웅 외, 1999: 4-11).

한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처우수준을 보면 그들에 대한 배려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의감 수준과 미래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류은숙, 1997). 그리고 선진민주국가인 유럽 청소년들은 세계인권선언의 30조 전문을 줄줄 외울 정도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김녕, 1999).

그러나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획일화된 규격 속에 간혀 통제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양말, 손톱까지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내지 Life-style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나 소지품 검사 등의 압수 수색에 관하여 학교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포괄적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전면적이고 자의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기본적 인권 보장 규정에도 직접 위반이 된다(신현직, 2001: 5).

1998년에 새로 제정된 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이 오늘의 삶의 주인으로 마땅히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져야 함을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학교현장에서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이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훈육과 온정적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권의 세기라는 21세기에 한국의 학생청소년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외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더 이상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윤민우, 2000)”“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그들에게 인권이 더 보장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준다.

(3)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청소년인권

사회적 자본이 합리적 인간들의 목적달성 과정에서 순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청소년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의무감 (obligations) 정보(information) 그리고 규범(norms)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문명사회의 규범이며, 이를 정보로서 아는 사람들은 또한 이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인권이 부재한 사회였다고 평가받는다. 물론 최근들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등으로 상징되듯, 한국의 인권상황은 과거보다 많아 나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에 관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태부족이다.

조혜정(1996: 31)이 말하듯, 대학입시에 편중된 현재의 상황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나, 모두가 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라는 이해당사자들은 청소년인권에 관련한 사회적 부채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이 당위의 명제인 동시에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 양성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인 까닭에 이를 보다 많이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곧,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인권을 지지하고 이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은 청소년인권의 증진을 위한 주요한 사회적자본 구실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청소년인권은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사회적자본의 구실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인권을 사회적자본의 시각에서 조망하면서, 청소년인권의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청소년인권증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이용한 청소년인권의 증진방안에 대해 모색해본다.

2) 연구결과

(1) 청소년인권관련 사회적 자본의 존재 검토

청소년인권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한국에 존재하는가? 이것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인권에 대해 청소년인권의 증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인권의 증진방안으로 132개의 문항을 문헌연구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 한 후,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3개의 영역, 곧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영역에서 각 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만일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특정한 방안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범주안에서만 따로 따로 효과를 발휘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면, 이것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광범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방안들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영역에 위치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지도자,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에 의해 비슷하게 인식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거나, 형성될 터전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132개의 제시 문항 중,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청소년인권증진 방안들에 대해 가정영역과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영역에 위치하는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각각의 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거나, 형성을 위한 터전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각 영역별 청소년인권 증진방안

① 가정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증진방안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가정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14-5)”과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14-1)”이 가정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가장 효과가 클 것(1.25점)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1.33점),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14-2, 1.42점)”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46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11-4), 1.46점)”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 1.46점)”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 의무화(14-3, 1.46점)”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46점)”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11-1, 1.48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적 언행 금지(15-3, 1.48점)”의 순서로 기대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가정영역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필요함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민법개정과 성폭력 방지 및 입시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가정영역 이외의 사회영역과 관련된 것들이 가정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대단히 긴요함이 나타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과 초등학생의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지역사회에서의 초등생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17점)”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중학생들 중학생들의 학부모들 중학교 교사들 지역사회에서의 중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은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15-1, 1.17점)”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부모들 고등학교 교사들 지역사회에서의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 1.25점)”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대학생 대학생의 학부모들 대학교수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11-1, 1.25점)”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11-2, 1.25점)”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15-1, 1.25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 1.25점)”이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② 학교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증진방안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1.21점)”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학급당 인원감축(8-2, 1.27점)”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동의 보장 및 양성화(2-6, 1.31점)”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9-1, 1.33점)”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33점)”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15-5, 1.33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15-6, 1.33점)”이 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지도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여기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이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학교영역에서의 학생 청소년들의 권리신장이 대부분 이들과 일상적으로 접하는 교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방안도 효과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초등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과 중학생 중학생의 학부모 중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중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은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1.08점)”가 초등학교 영역에서 가장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부모 고등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17점)”이 고등학교 영역에서 가장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대학생 대학생의 학부모 대학교수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생 대상의 청소년지도자들은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동의 보장 및 양성화(2-6, 1점)”이 대학교 청소년들의 범주에서 가장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③ 사회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증진방안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25점)”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채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16-2, 1.27점)”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6-1, 1.35점)”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6-10, 1.35점)”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8, 1.33점)”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11-2, 1.33점)”등이 순차적으로 효과가 큰 것

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의견을 갖고 있었다.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학부모 초등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초등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공개(14-7, 1.08점)”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16-2, 1.08점)”이 이들이 속한 사회에서 가장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중학생 중학생의 학부모 중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중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은 “학급당 인원감축(8-1, 1.25점)”과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1.25점)”이 이들이 속한 사회영역에서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학부모 고등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은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6-1, 1.17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16-2, 1.17점)”이 이들이 속한 사회영역에서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대학생 대학생의 학부모 대학교의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생 대상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08점)”가 이들이 속한 사회영역에서 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3) 모든 영역에 공통되는 청소년인권 증진방안

분석결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44개

의 방안들이 시행되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지도자들의 의해 기대되었다.

(1) 학생자치 활동 및 동아리활동 관련에서는, “학생 자치 동아리의 지도교사제를 교사·청소년지도자·학부모·지역사회지도자 등을 포함한 “멘터(mentor)제”로 변경(2-9)이 분석되었다.

(2) 교과과정 개편 관련에서는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4-1)”이 분석되었다.

(3) 청소년 상담관련에서 “학교내 청소년상담 전문교사 혹은 학교사회사업가의 배치 의무화(5-2)이 분석되었다. (4) 학교 등의 청소년 시설 관련에서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6-1)” “학교시설 내에 온실이나 화원 등을 포함한 아름다운 공간을 가꿈(6-4)” “청소년 대상시설 및 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청소년이용객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경(6-7)” “청소년 이용 시설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가까운 곳에 설치(6-8)” “청소년 이용시설 다양화(6-9)”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6-10)”이 분석되었다.

(5) 청소년 시설 내의 휴식공간 관련에서 “여학생 또는 여자 청소년을 위한 휴게실의 확보 및 실제적 운용(7-2)” “학교식당에서의 학생과 교사(수)에 대한 차별적 식단 철폐(7-8)”이 분석되었다.

(6) 학교운영 관련에서 “학급당 인원감축(8-1)”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여성 장애우 외국인노동자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자리 마련(8-6)”이 분석되었다. (7) 학교 규칙 관련에서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9-1)”가 분석되었다.

(8)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의 개선 관련에서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10-2)”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점수경쟁 부추기는 언론의 자정노력 요구(10-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교육 강화(10-6)”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8)”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9)” “학교 앞의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거나 차로 폭을 좁혀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10-13)” “청소년지도사 담당 학생수 감축(10-16)”이 분석되었다.

(9) 인권교육 관련에서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11-1)”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11-2)”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청소년 인권교육 의무화(11-3)”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11-4)”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대상 인권교육 의무화(11-5)”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이 분석되었다.

(10) 청소년 권리 관련 홍보에서 “청소년들의 자기권리 주장 능력의 강화(12-1)” “청소년 권리에 대한 TV프로그램 방영(12-3)”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지원(12-9)”이 분석되었다.

(11) 청소년 권리보호 법체계 관련에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을 청소년 지향적으로 고치거나 만들(14-1)” “가장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14-5)”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공개(14-7)”이 분석되었다.

(12) 가족간 교사-학생간 일상적 대화 관련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15-6)” 이 분석되었다. (13) 청소년 노동 관련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 제정(16-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기구 설립(16-4)”이 분석되었다.

(14)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관련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계와 이를 위한 지원(17-6)”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증대(17-7)” “청소년들의 NGO 참여기회 확대(17-8)” 이 분석되었다. (15) 기타에서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터넷사이트개설 및 운영지원(18-1)”이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44개의 방안들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영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본연구에서는 1.50 이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인권의 증진방안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몇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종전까지는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주로 학교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가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반면, 본연구는 학교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청소년인권증진은 학교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노력에 의해 간접적이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연구결과, 본 연구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인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청소년지도자들

은 각자가 속한 곳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 방안들이 타영역에서도 효과를 발위할 수 있으리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본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인권과 인권의 증진을 위한 친화적인 조건, 곧 사회적 자본이 이미 갖추어져 있거나 갖추어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 및 사회영역에서 각각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들을 가려내어 보았다. 그 결과, 가정영역에서는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에 의한 가혹행위나 성폭력 행위 때는 친권이 제한되도록 민법 개정(14-5)”과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확보(14-1)”이 가정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가장 효과가 클 것(1.25점)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15-2)”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1.33점),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14-2, 1.42점)”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46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11-4, 1.46점)” “청소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확대(11-8, 1.46점)”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 법 제정과정에 청소년의견 반영 의무화(14-3, 1.46점)”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46점)” “청소년 대상의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11-1, 1.48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적 언행 금지(15-3, 1.48점)”의 순서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영역에서는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축(8-2, 1.21점)”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감축(8-2, 1.27점)” “학교 동아리 구성과 클럽활동의 보장 및 양성화(2-6, 1.31점)” “학생징계과정에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의무화(9-1, 1.33점)”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10-4, 1.33점)”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많이 갖기(15-5, 1.33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주의(15-6, 1.33점)”이 학교영역에서의 청소년권리신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지도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지역사회영역에서는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신고죄 폐지 및 신고 의무화(14-6, 1.25점)”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16-2, 1.27점)” “각종 청소년 시설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의무화(6-1, 1.35점)”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공연 및 운동공간의 확보 의무화(6-10, 1.35점)”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위반한 때에는 제재(10-8, 1.33점)”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접목(11-2, 1.33점)”등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라는 영역이 상호연결되어 있고, 학부모와 교사 및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 및 학생들이 청소년인권에 대해 그다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및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같이 나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가장 큰 효과를 거두려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따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동시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여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인권의 증진방안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곧,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청소년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방안을,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합리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전의 인권의 도덕적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나, 당위적 인권의 교육에 대한 주장들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청소년의 인권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를 위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사회적 자본이 어느정도나 형성되어 있는지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인권에 대하여나, 청소년인권의 증진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지도자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청소년인권증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라는 각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 방안을 찾는데서 시작하여,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청소년인권증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제 이곳에서 제시된 것들을 시행에 옮기면, 보다 효과가 큰 인권의증진 상황을 연출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의 과정과 결과

를 통해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함께 책임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시설보다 장애인들의 시설에 대한 배려를 하는 성숙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여름 붉은 악마 응원단의 중심이었던 청소년들의 성숙한 응원문화도 그들의 성숙함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려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숙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성숙함을 계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들을 성인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상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김찬호, 2002: 210).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권리를 신뢰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 바로 신뢰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법과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들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가정들의 성폭력에 대한 권리의 제한을 포함한 민법개정, 징계대상 학생들의 소명기회 제공과 같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더 큰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미 민법 924조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과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자녀의 친권박탈을 청구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한 친권박탈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심사방안 마련과, 부모의 친권박탈 이후의 자녀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 역시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학생을 징계할 때 해당학생들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은 초중등교육법과 각 학교의 학칙 등은 대학생

들에게는 이미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과 각 대학의 학칙 등의 내용이 준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형태가 규범이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법이다. 이러한 법이 사람들 사이의 행동규범을 정해주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처럼, 청소년을 위해 민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된다면, 청소년인권을 위한 사회적자본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과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러한 법의 개정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은 각자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교사와 학생들의 문화와 시각이 서로 상이하고 때로는 상반됨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증진의 방안에 관한 한, 이들은 서로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학생들끼리도, 같은 학부모나, 같은 교사들끼리도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지도자들 사이의 생각사이에 유사함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이 증진을 위해 이들이 서로 생각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지도자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특수한 상호호혜적 의사소통의 폭을 넓혀서 확산된 상호호혜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때 크게 증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지도자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그들끼리의 상호호혜적 규범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영역을 넘어서는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인

권증진을 위한 연대의 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전종호, 2001).

다섯째,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제까지 많은 혼돈이 있어온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들에 대한 전문가들인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수적임을 말해주고 있다(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2002: 2).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학급당 인원축소 노력과 함께 교원1인당 실질적인 학생수의 감소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밖에 교사가 학생들을 보다 편안히 만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의 연대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학교당국과 교육당국에서는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여섯째, 청소년인권의 증진을 위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영역에서 따로 또 같이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방안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되는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속에 이러한 방안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면 청소년인권증진에 획기적인 증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많은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와 경기도차세대 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와 관련된 문항들을 면접지에 다수 포함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시된 청소년인권증진의 효과적 방안으로는 한가지도 채택되지 못하였다.

특히 면접의 대상자 48명 가운데 면접 이전에 청소년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들 모두가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제까지의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많은 자리에서 거론된 청소년위원회의 정체성과 대표성 및 공간과 예산지원조차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의 열악함에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고, 공간과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청소년위원회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강선구, 2002; 경기도차세대위원회, 2002a; 2002b;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2002).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지도자들 각 3명씩 총 4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지도자들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3명씩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연구의 일반화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제시된 18개 영역의 132개의 설문으로 제시된 청소년인권향상방안들이 이러한 청소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으로 구분되어 비교되었으면 더 좋았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지면부족 등으로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선구 (2002). 청소년위원회는 없어져야 한다. 문화관광부.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정책 토론회 자료집. (pp.16 -20). 2002. 4. 20.
-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 (2002a). 청소년 정책 인지도 및 의식 조사 보고서. 수원: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
-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 (2002b).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제안서. <http://cafe.daum.net/sala>. (검색일: 2002. 10. 20).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http://www.humanrights.go.kr/bbs/content.asp>. (검색일. 2002. 9. 13).
- 권용혁 (2002).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규범: 사회적 연대의 비판적 기준모색. 철학과 합리성. (pp. 81-115). 서울: 이학사.
- 권이중 (1996).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제10권 제1호. pp.21-40.
- 김 녕 (1999).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향후 인권과제, 국가전략 제5권 제1호, pp.41-73.
- 김용학 (1997). 고신뢰 사회를 향한 연결망 구축방안. 사상. 22권 여름호. pp.100-124.
- 김인규 (2002). 사회병리현상-눈병. <http://www.cne.go.kr/html/sori/index.html>. (검색일. 2002. 9. 13).
- 김정래 (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서 (1998).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공법연구. 제28권 제2호. pp.197-215.
- 김중섭 (2001). 인권실행의 사회적 장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 인식 2000년 겨울호, pp.37-61.
- 김찬호 (2002). 사회구조의 변화와 청소년 문제 사이.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청소년운동 그 전망과 과제. (pp.209-221) 서울: 청협
- 김혜숙, 김정래, 고건 (1999).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RR99-12.
- 노혜련(1997).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및 세계 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편,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pp.100-125).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류은숙(1997).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각 조항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편,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문성호, 성경숙 (2000). 학생청소년의 권리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 146호. pp.67-94.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2002). 청소년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2-njpark1.htm)
 HRLibrary2-njpark1. htm(검색일.2001. 10. 7).
- 박찬웅 (1999). 경쟁의 사회적 구조: 기업내 신뢰의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의 조직내 성과. 한국사회학. 제33권 제4호, pp.789-817.
- 배경내 (1998).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경내 (1999).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한다!.
<http://withyou.net/~loveteen/data/thesis/thesis.htm>
 (검색일:2001. 8. 20).

- 설훈 (2001). 인권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http://www.sh21.or.kr> (검색일: 2001. 10. 2).
- 성정숙 (1999). 학교에서의 아동권리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1호, pp.61-75.
- 신현직(2001). 학생의 인권과 학교규정 제정에의 참여권.
http://club.sayclub.com/myclub_index.nwz?clubid=union10
(검색일: 2001. 10. 4).
- 아름다운학교만들기 운동본부 (2001). 아름다운 학교란 무엇인가?
<http://www.school1004.net/data/> (검색일: 2002. 9. 30).
- 안승환 (2002).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운동 그 전망과 과제. 서울: 청협 69-81쪽.
- 육이은(2001). 학생의 눈으로 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편),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권리(2001년 제2차 국제이해교육연구토론회). (pp.35-48). 서울: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이경묵 (1996).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활용. 노사관계연구(서울대) 7권. pp. 265-290.
- 이광호 (2001).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1-12.
- 이기범 (1997).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편),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pp.126-134).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pp.5-29.
- 이수연, 문용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인식의 관계연구.

-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1호 pp.65-89.
- 이용교 (1999). 청소년인권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0권 제1호 pp.25-41.
- 이용교, 김영지, 임지연(1999).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열 (1996). 시장구조와 기업의 조직적 과정에 대한 경제사회적 연구: 시장과 기업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권 제3호 pp. 493-518.
- 이제연, 이소라 (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부모·교사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1호 pp.25-41.
- 장윤미 (2002). 내가 바라는 청소년 정책 제언. 문화관광부.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정책 토론회 자료집. (pp.37-43). 2002.4.2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0). 다시 생각하는 학교. [http:// eduhope.net/](http://eduhope.net/) (검색일: 2002. 9. 3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0). 새로운 학교문화운동의 실천가능성을 찾아서. <http://eduhope.net/> (검색일: 2002. 9. 30.)
- 전종호, 우리 교육 희망을 찾는 100인 포럼 창립을 제안한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위기의 한국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pp.56-58)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 우리교육 희망 찾기 제1차 심포지움. 2001.5.7.
- 정유성 (2001).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민주시민 육성 방안. 교육 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1-지정13.
- 정준교 (2002a). 학생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 학생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아동권리학회. 제5권 제1호. pp.133-168.
- 정준교 (2002b). 인권지향적 고등학교의 문화적 특성과 학생 청소년

- 년들의 창의성 및 복장변형행동.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1호. pp.141-165.
- 정희욱 (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혜정 (1991). 청소년의 평등한 삶을 위한 과제-가정과 학교간의 유착현상을 통해본 제도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3호. pp.5-21.
- 조혜정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중고등학생복지회 (1998). 학생인권선언서. <http://www.rights.or.kr/rule01.asp> (검색일: 2001. 10. 20).
- 천정웅, 김영지, 김경호 (1999). 청소년이 알아야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
- 최순규 (2001). 신뢰. 사회적 자본.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 북악경영연구(국민대). 7권. pp.439-458.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 http://www.kfta.or.kr/cgi-bin/data/counsel_2/content.asp?Fpage=1&num=43&f_div=f (검색일: 2002. 9. 30).
- 현원일 (2001). 학교 생활 속의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http://www.unesco.or.kr/kor/science_s/d_5_7.html). (검색일: 2002. 4. 10).
- 후쿠야마, 구순희 (옮김) (1999). 트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Boggs, C. (2001).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fantasy: Robert Putnam's *Bowling Alone*. *Theory and Society*. vol. 30. 281-297.
- Coleman, J.S. (1988) "Social Capital" and Schools. *The Educational*

Digest. pp. 6-9.

Kalenberg, R.D. (2001). Learning from James Coleman. *The Public Interst*, pp. 54-72.

Lin, N., K. Cook and R.S. Burt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www.inesia.com.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 0교시 폐지운동 기사들. (검색일: 2001. 3. 10).

Putnam R.D.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청시 옮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 서울: 박영사).

Putnam R.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1, 65-78.

Sandefur R. L. and Laumann, E. O. (1998). A Paradigm for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Vol 10 No. 4. pp. 481-502.

idoo.net (2001). 우리는 왜 노컷을 시작했었나. <http://www.idoo.net/nocut.php> (검색일: 2001. 9. 15).

inesia.com (2002). 0교시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 <http://www.inesia.com> (검색일: 2002. 3. 17).

중앙일보. 2002. 9. 25일자 기사. 갓 고교를 졸업한 19세 소년, 독일 초연소 의원 당선. http://www.joins.com/society/200209/25/20020925101122_757214001_4601461.html.

한겨레신문. 2002. 11. 1일자 기사. 일 노벨상 수상자, 일본 교육제도는 학생 압살.